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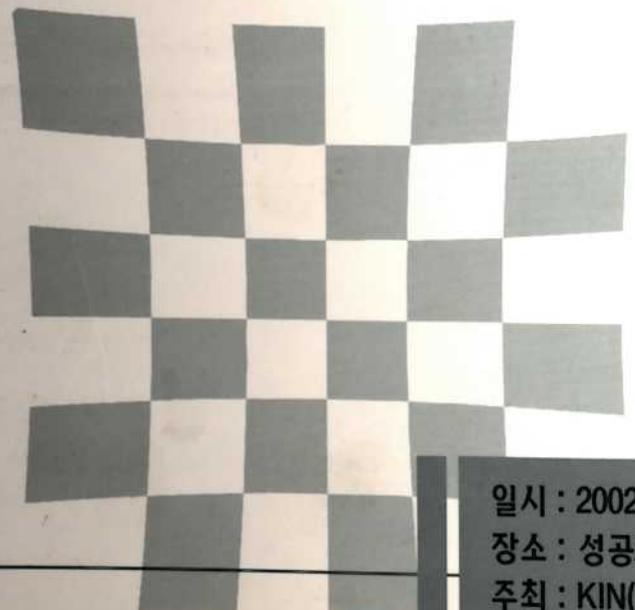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인권정보자료실

Mml.2

추진위원회

##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일시 : 2002년 11월 23일(토) ~ 25일(월)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4층 7417호

주최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재외동포재단, 성공회대학교NGO학과

2002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 추진위원회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목 차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국제심포지움을 지켜보며-----	4
KIS 추진 경과보고-----	5
KIS 프로그램-----	6
발제자 약력-----	7
소수민족(ethnic minority)으로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며-----	8

### (해외 6개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검토)

러시아	
발제문: 러시아 연방의 소수민족 정책 및 한인 정책-----	11
토론문-----	30
중국	
발제문: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화교정책-----	32
토론문-----	42
일본	
발제문: 일본의 외국인정책과 재외동포정책-----	44
토론문-----	70
독일	
발제문: 독일의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정책-----	72
미	
발제문: 인종적, 종족적 소수를 위한 미국의 정책-----	79
토론문-----	96
브라질	
발제문: 브라질의 소수민족정책 및 재외동포정책-----	98
토론문: -----	131

### (각국의 재외동포사회의 과제)

러시아: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	134
중국 :재외동포 정책개정에 대한 견해-----	138
일본 :재외 동포 정책에 관한 논평-----	141
독일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부에 대한 건의-----	143
미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제안-----	147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153

##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의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추진위가 준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브라질 등 해외 6개국 재외동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각국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여러나라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 내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를 바라며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KIS는 심포지엄을 통하여 각국의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재외동포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을 발제자로 초청하고, 해외거주경험이 있었던 국내 연구자 및 활동가들을 토론자로, 이 심포지엄에 관심있는 분들을 객석 토론자로 하여 진행되는 열띤 토론의 장입니다. 이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KIS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사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한민족’이라는 협통적 네트워크를 넘어, 그리고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국가의 소수민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포지엄을 위하여 힘껏 함께 뛰었던 KIS 추진위 성원들, 바쁜 일정에도 발제를 위하여 해외에서 참여해주신 발제자 여러분들, 토론자분들, 번거로운 번역작업을 도와주신 번역자분들, 그리고 물질적 후원을 해주셨던 시민운동지원기금과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KIS 추진위원회 권준희

##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국제심포지움을 지켜보며

이번 KIS 국제심포지움은 재외동포교류단체인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국제심포지움입니다.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규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역사 및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관심이 참으로 미미하고, 재외동포 관련 행사 등도 여전히 정부주도의 모양과 형식에 치우쳤던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 뜻은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심포지움을 함께 준비하면서, 밤잠을 아껴가며 발제문을 직접 준비해주시고 참가해주신 6개국 재외동포 활동가 및 연구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99년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각 국 재외동포의 역사 및 실태, 국내의 재외동포정책에 주목하고 발언해왔으며, 국내시민사회에 활력을 더해온 것입니다. 1998~2000년 각 국 재외동포 역사 및 실태와 관련된 20차례 이상의 포럼, 1999~2002년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운동과 개정운동, 1998~2002년 조선(朝鮮)적 재일동포들의 국내자유왕래 캠페인, 창립 이전 및 이후의 각 국 동포청년들과의 교류프로그램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KIN은 '재외동포권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사회를 비추는 자화상'임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차별받는 이주집단에 대해서도 그 현실에 항상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KIN은 특히 '역사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외동포를 만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라는 말에는 일제 식민지, 남북분단과 냉전 친마친일의 군사독재정권이라는 빠아픈 현대사가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회 및 역사 속에서, 거주국 및 부모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재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당한 역사주체로 등장하기에는 이 사회는 아직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외동포법 개정운동의 과정에서 KIN은, 몇 가지 커다란 반대논리에 부딪힙니다. 재외동포를 국내에서 우대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 반한다는 원칙적 반대논리(외통부, 국가인권위, 일부 학계), 그리고 재외동포 다수국의 입법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사례적 반대 논리(법무부, 외통부), 국내 안보 및 노동시장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적 반대 논리(법무부, 국회) 등이 그것입니다.

KIS 국제심포지움은 이러한 기성의 변칙적 논리에 대해 차분히 접근하고 비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움이 6개국의 소수민족정책 및 재외동포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재외동포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각 국 재외동포 및 국내 피차별 이주집단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KIS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러시아-최안나님, 중국-양옥금님, 일본-송승재님, 독일-신효진님, 미국-김대영님, 브라질-김범진님, 그리고 국내 토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IN과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져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단체의 국제심포지움을 적극 후원해주신 (사)시민운동지원기금, 성공회대 NGO학과, 재외동포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1월 19일(화), KIN 배덕호 집행위원

## KIS 추진 경과보고

### KIS 추진 경과보고

#### ◎ KIS 준비위원회

1차 회의 2월 9일  
2차 회의 3월 2일  
3차 회의 3월 16일

#### ◎ KIS 추진위원회

발족식 3월 23일  
1차 회의 4월 6일  
2차 회의 4월 27일  
3차 회의 5월 5일  
4차 회의 7월 13일  
5차 회의 7월 23일  
6차 회의 8월 10일  
7차 회의 8월 24일  
8차 회의 8월 31일  
9차 회의 9월 7일  
10차 회의 9월 14일  
11차 회의 10월 5일  
12차 회의 10월 12일  
13차 회의 11월 2일  
14차 회의 11월 9일  
15차 회의 11월 16일

#### ◎ 상반기 세미나 -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1차 5월 25일 : 미국-브라질  
2차 6월 1일 : 독일-중국  
3차 6월 8일 : 일본-구소련

#### ◎ 하반기 세미나 - '각국 재외동포 정책 및 소수민족 정책'

1차 8월 10일 : 일본 아이누 정책  
2차 8월 24일 : 각국 소수민족 정책  
3차 8월 31일 : 각국 재외동포 정책  
4차 9월 7일 : 한국 재외동포 정책  
5차 9월 14일 : 한국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현황

#### ◎ KIS 준비를 위한 워크샵

1차 9월 28일 :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현황 (재외동포재단 교류부 강윤모 과장 등)  
2차 10월 19일 :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KIN 자문위원 이종훈 박사 등)

#### ◎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11월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

## KIS 프로그램

### 국외6개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비교 검토

#### 첫째날 23일 토

<여는마당> 낮 4시

참가자인사, KIN 및 KIS 소개, 문화공연

<제1마당> 저녁 7시

<러시아>

발제: 최인나(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토론: 유의정(한국외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중국>

발제: 양옥금(중국 연변대 민족학 교수)  
토론: 김화선(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 둘째날 24일 일

<제2마당> 아침 10시

<일본>

발제: 송승재(일본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토론: 조경화(동경대학교 박사과정)

<독일>

발제: 신효진(독일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최영숙(독일 한독문화협회 회장)

토론: 남상희(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제3마당> 낮 1시

<미국>

발제: 김대영(미국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토론: 박준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브라질>

발제: 김범진(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토론: 최금좌(한국외대 포루투칼어과 강사)

<제4마당> 낮 3시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 셋째날 25일 월

<제5마당> 아침 10시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닫는마당> 낮 1시

선언문 채택

#### 중국

○ 양옥금

1978년 중국연변대학 정치학부 졸업

1987년 중국중앙민족대학 민족학 연구생반 졸업

연구분야: 민족학, 민족이론과 중국의 민족정책

현재 중국연변대학민족연구원 민족이론연구소 교수, 소장

#### 일본

○ 송승재

재일한국청년연합(한청련) 공동대표

1994년 재일한국학생동맹(한학동) 효고현(兵庫縣) 본부 부위원장

1998년 재일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 참여 한청련 이쿠노미나미(生野南) 조직차장

2002년~현재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브라질

○ 김범진

1993년 브라질 한국 대학생 협회 회장

2000~현재 상파울로 시 공공행정 및 법률 보좌관

2001~현재 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 독일

○ 최영숙

1987년 재독 한국여성 모임 총무 및 독일 녹색당 당원

1992년 전 재유럽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약칭 민협) 대표

1990년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약칭 범민련) 국제부와 문화부 활동

1998년~현재 한독 문화협회 회장

#### 신효진

1994년 사물놀이 패<천둥소리> 공동창립

1996년~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대학원 음악 전공

1997년~현재 광주항쟁기념 5월 세미나 공동주최자

#### 구려시아

○ 최인나

한국문학 박사과정

2000년~현재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교 한국어한국문학과 전임강사

#### 미국

○ 김대영

2000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2001년~현재 메릴랜드대 사회학과 아시안계 미국인학과 조교수

### 소수민족(ethnic minority)으로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며

-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의 제안배경 및 취지—

1. 우리의 화두는 국민과 민족이다.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집단, '국민'. 그리고 혈통, 언어 등의 동질성에 기반한 집단, '민족'. 국가는 '국민' 혹은 '민족'이란 이데올로기를 통해 안으로는 국가 통합을, 밖으로는 재외동포 통합을 추구한다. 이때 통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질적인 국민이나 민족 집단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된다.

2. 오늘날 한민족은 7천5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전세계 150여 개국에 걸쳐 살고 있다. 그 중 (남)한국인이 4천7백만 명 정도, (북)조선인이 2천2백만 명 정도이고, 재외동포는 6백만 명에 이른다. 한반도 인구 1백 명 당 8명꼴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 중 재미동포가 2백10만 명, 재중동포가 1백90만 명, 재일동포가 1백20만 명, 재CIS동포가 52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브라질동포가 5만 명, 독일동포가 3만 명으로, 캐나다동포 14만 명, 호주동포 5만 명과 더불어 재외동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재외동포는 한반도로부터 다른 나라로 아주하여 살아가는 이들로서, 근대 강대국의 식민지배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다. 이들은 1960년대 가난과 기근으로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 시기에는 식민지 수탈 및 차별 정책 등에 의해 구소련,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이주가 본격화됐다. 해방 후 한국정부는 외화벌이를 통한 경제발전과 인구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민을 유도했고,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지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오늘날 지구화와 국가간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구적 차원의 이주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고, 따라서 재외동포의 형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4. 재외동포가 이주의 역사나 거주국의 이민, 소수민족 혹은 노동 정책에 따라, 거주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혹은 생취한 법적 지위는 다양하다. 시민, 영주 정주권자, 일시적 이민자,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등등... 거주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재외동포들은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같은 민족'으로 통합돼야 할 대상이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재외동포들은 국민이나 민족 어느 한 곳으로도 완벽히 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 결과 재외동포들은 역사적으로, 법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5. 우리는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권사회를 지향한다. 소외와 차별 구조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의 삶 자체가 바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재외동포의 존재 조건 자체는 한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늘날 인권의 문제가 한 국가를 넘어 인류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6. 이번 심포지움에서 우리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검토한다. 소수민족 정책이 일종의 국가통합 정책이라 한다면, 재외동포 정책은 대외적 국민 혹은 민족 통합정책이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소수민족 정책 또는 재외동포 정책은 국가발전 전략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를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검토하려 한다.

7.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한국의 재외동포를 공동의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그

자체로 비교 가능할 것이다.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8. 오늘날 국제행사에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영어가 쉽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거부하며, 한국어를 이번 심포지움의 공식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반도가 아닌 전세계에서 한민족은 분명 소수민족이며, 한국어는 소수민족의 언어다. 따라서 한국어를 공식어로 하는 국제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소수민족으로서 한민족이 생존하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9. 우리는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건설을 희망한다. Korean International Network는 단지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지구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전세계 재외동포들에게 연대를 호소한다. 우리가 꿈꾸는 Korean International Network는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를 지향하는 운동의 주체이자 인적 관계망이다. 이번 심포지움이 참가자들에게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건설을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2002년11월23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

**각국의 소수민족 정책 및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발제문 및 토론문**

## 러시아 연방의 소수민족 정책

최인나(러시아 상트페테스부르그대 한국문학 전임강사)

### 1. 서 론

국가조직을 가진 많은 나라들 속에는 고유한 정부조직이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수 민족들이 존재한다. 러시아연방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소수 민족들은 그 사회의 소중한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습과 문화로 그 사회를 풍성하게 만든다. 따라서 소수 민족들의 권리 보장은 사회의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많은 나라들은 이 소수 민족들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법률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유엔총회에 의해서 채택된 '국가, 민족, 종교, 언어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이 문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부상되었다.

이 선언은 유럽의 소수 민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에 초석이 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의 틀 속에서 '소수 민족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회담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협약은 소수 민족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국제적 인권보호와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언했다. 현재까지 러시아연방을 포함한 36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독립국연합 국가들은 소수 민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협약을 채택했다).

### 2. 소수 민족의 정의

- 연방 주체들의 입법활동에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소수 민족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약의 체결은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의 어떤 조문에도 '소수 민족'이란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각국의 소수 민족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데, 이에 따라 각국이 제각기 다른 '소수 민족'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모든 나라들은 소수 민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 국가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수 민족의 개념발생의 역사적 기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유럽 민족의 민족국가 형성시기에 탄생했으며, 해당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조직력이 없었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필수적으로 국가소속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민족국가나 민족영토를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민족문화의 자치권을 가지는 것이 소수 민족의 자기규정을 위한 법률적 형식이 되었다. 이와 함께 소수 민족들은 소속 국가의 외부, 즉 自민족이 정식 국가를 갖춘 곳에서는 국가체제를 가질 수 있었다.

소수 민족은 '토착소수종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북방과 시베리아, 극동지역 등등의 개척 시대에, 국가형성 인식 없이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수 백 년간 유지했던 몇몇 종족들은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었다.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조문 속에서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정의들('소수 민족', '토착소수종족', '소수종족집단')과 연방 법률에서 규정된 정의들('소수종족들', '토착종족들', '북방 소수종족들', '북방 토착소수종족들', '민족 그룹과 집단들', '종족집단', '북방 소수종족집단', '문화-민족적 집단')이 사용된다.

연방의 현행법 속에는 딱 한가지 용어의 정확한 해설/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북방 토착소수종족들'로써, "자기 선조의 전통 거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유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종족들. 이들은 러시아에 5만 명 정도가 있으며, 자신들을 독립적 민족집단이라고 인식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소수 민족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을 수용하기 힘든 이유는 소수 민족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이처럼 복잡하게 조건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연방입법자들은 소수 민족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명료하게 대답해야 한다.

- '소수 민족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민족정부, 행정적-영토적, 혹은 민족적-영토적 조직을 가진 종족들(나로드)에게 해당하는가?
- 만약 해당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기" 영토 외부에서 살아야 하는가?
- '소수 민족'의 개념은 '종족(나로드)에게만 적용되는가?
-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소수 민족'에 포함되는가?
- '토착소수종족들'도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가?

이와 같이 소수 민족의 개념은 폭 넓은 해석이 가능하며, 소수 민족과 관련된 민족들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러시아연방 주체와 다른 민족 범주 속에 살고, 이 주체의 주류 민족과 무관한 민족들이 주체들의 영토에서 수적으로 소수로 사는 민족들
-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을 가진 민족들
- 자신을 '소수 민족'이라 인식하는 민족들
- 연방 입법부가 규정하는 토착소수종족이 아닌 민족들.

이런 식으로 소수 민족의 정의는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들 속에서 변화된다. 자신의 역사적 기원(민족의 주요 거주지-역자주) 밖에서 밀집해서, 혹은 분산해서 살고 있는 이 러시아연방 시민들은 토착소수종족과는 무관하며, 언어, 고유한 생활 문화, 종교 등의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3. 러시아연방에서 소수 민족 권리보호과 법적 조정의 문제

러시아연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민족국가 중 하나이며, 170개의 민족과 1억4천만명의 인구가 사는 나라이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다민족국가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현재의 러시아 영토에 자신들의 역사적 모체(기원-역자주)를 가지고 있다. 약 23개의 민족이 '명목상'의 민족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고전적' 소수 민족의 대표가 되고 있다(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벨로루시아인, 그리스계인, 그루지아인, 카자크인, 키르기즈인, 고려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몰다비아인, 독일계인, 폴란드계인, 타자크인, 투르크메니아인, 우즈베크인, 우크라이나인, 핀란드계인, 에스토니아인 등등). 러시아의 토착소수종족은 약 65개정도 된다. 다양한 인종그룹들의 구성원은 수만부터 수백만까지 아주 천차만별이다(24개의 인종). 대체로 소수 민족은 러시아연방 인구의 20%정도를

차지한다.

. 러시아는 특히 정부구성에 있어서 민족적-영토와 행정적-영토의 원칙들이 아주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에는 89개의 연방주체들과 21개의 공화국, 6개의 행정지방, 49개의 자구, 2개의 연방적 도시, 1개의 자치구, 10개의 자치영역이 소속되어 있다. 89개의 연방주체들 중에서 완전한 정치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21개의 공화국(이전의 자치공화국)과 1개의 자치구, 10개의 자치영역만이 국가조직을 가지고 있다.

인구 구성상 이 주체들은 모두 多민족적이다. 21개 공화국 중 7개 공화국에서만 인구의 반 이상이 토착민이다. 21개 공화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고유한 국가조직 외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바쉬코르토스탄과 타타르스탄, 투바, 야쿠치아에서는 이민족(=명목상 민족: 역자주)의 비율이 더 크며, 이들이 국가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어떤 민족들은 90년대 초부터 러시아연방의 주체에 포함되어 독자적 민족정부를 형성하기도 했다.

오늘날 러시아연방에는 90개의 민족-문화 독립체와 3개의 연방적 문화-민족 독립체(러시아계 독일인, 고려인, 우크라이나인)가 존재한다.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는 반드시 견고한 법률적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로 하여금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강요하는 근거가 바로 '러시아연방헌법'이며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의할 권리와 민족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 연방적 수준에서 헌법 정신과 일치하며, 소수 민족의 권리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민족-문화 자치권 관계법', '토착소수종족들의 권리보장 관계법', '시민권 관계법', '교육 관계법', '대중정보 방법 관계법', '러시아연방의 인권에 관한 전권부여 관계법',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 자유 관계법' 등이다.

1996년에 개정된 새로운 형법 법전은 성, 인종, 민족, 언어, 출생, 재산, 거주지, 종교, 신념, 사회조직의 소속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적대감을 야기하는 행위와 타 민족성 비하,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 소속에 따른 우월성과 차별성, 열등성의 선전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소수 민족 관계법안'과 '북방, 시베리아, 극동 토착민족공동체 형성의 원칙 관계법안', 그리고 '민족적 불화 선동 금지와 공무원들의 책임의 한도에 관한 대통령령'은 의회 통과 단계에 있다. 이러한 법률적 토대 강화의 과정은 연방 수준뿐만 아니라, 연방주체들의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법률개정작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연방법과 토착법과의 마찰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국가정치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 국민들의 사회적, 민족-문화적 발전과 사회통합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1996년 7월 15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국가정치의 개념' 속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국가정치의 기본적 원칙들을 확립하고 있다.

- 인간과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사회적 소속과 무관하다.
-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혹은 종교적 소속에 따른 시민권의 제한은 어떠한 형태도 금지한다.
- 역사적으로 형성된 러시아연방의 종체성을 보존한다.
- 러시아연방 주체들은 연방정부조직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평등하다.
- 러시아연방 헌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과 국제법들의 원칙에 따라 토착소수종족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 모든 시민은 어떤 조건 없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의하고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 러시아연방 민족들의 민족문화와 언어 발전을 위해서 협력한다.
- 모순과 갈등은 적시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와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반목, 적대감을 야기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러시아연방의 국가 두마(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역자주)는 1998년 11월 6일 '러시아연방의 국제관계를 혼란시키는 행위와 빌언의 금지에 관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민족문제는 정치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선 안 된다.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의 경험상, 민족간의 신뢰와 동의의 길만이 국가의 통일성을 보장해준다. 우리 조국에서는 민족적 관계를 혼란시키는 빌언과 행위는 금지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회의 국가 두마는 민족적, 종교적 편협함을 보여주는 어떠한 형태에도 단호히 대처하며, 선행과 상호지원, 모든 민족성의 존중만이 러시아정부의 건고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려하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러시아 소수 민족의 발전 보장이라는 과제는 '민족적, 정치적 극단주의와 분리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소수 민족의 권리보호는 국가의 통치력과 영토적 총체성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 러시아국적 한인들(고려인)

### 1. 형성의 역사

극동지역에서의 한인촌락 형성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의 국경확장과 때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에 합병되었던 당시까지만 해도, 한인들은 거기서 살지 않았었고, 단지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1860년 북경조약과 함께 아무르 우측 해안을 따라 있는 광범위한 영토가 러시아에 복속 되었고, 우수리 강으로부터 동쪽으로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엄청난 수의 이주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토지부족, 대부분 농민들의 가난, 그리고 과중한 세금부담은 한인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영토에 한인 이주민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주로 만주에서 오거나, 아니면 러시아-한국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었다. 첫 번째 이주민 가족은 1864년 1월, 연해주 지역 빠시예트로 이주했고, 야채 농사를 짚었다. 이 지역으로의 한인들의 유입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권력층은 한인들의 이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 북부지역의 흥년과 그로 인한 기아 때문에 1869년 말에서 1870년 초까지 가장 많은 수의 한인 이주민들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는데, 그 수가 6만5천 명에 달한다. 한인 이주에 관한 러시아 권력층의 입장은 관대하였다. 처음에는 이주민들에게 곡식과 종자를 제공하였으며, 광범위한 토지의 개간을 허락하였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한인 이주민들을 나풀스끼 촌락(지금의 우수리市)의 서쪽에 위치한 네 개의 촌락에 거주시켰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장관인 뿐칠로 하의 촉탁관리가 한인 이주민들을 관리하였다. 그 촉탁관리는 한인의 생활상과 한국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후에 러시아 최초의 러-한 사전을 발행했다. 이 사전을 가지고 한인들은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인 거주지 가운데 한 곳의 명칭을 '뿌칠로프까'라고 짓기도 하였다.

1896년부터 한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주민들은 러시아 정교를 수용하기 시작한다. 1905년에 이르면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의 수가 2만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이주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통감정치가 시행된 후인 1908년에 이르러 더 증대되었다.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먼저 개척한 분야는 농업부문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한인 이주민들은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한인 이주민들의 공로로 이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분야가 형성되는데, 다름이 아닌 벼농사이다. 한인 이주민들은 또한 지속적으로 산업분야로 진출하였다. 러시아 국적을 지닌 한인 농민들 중 일부분은 연해주의 여러 도시에서 일용노동자로 충원되기도 하면서, 농촌 부르주아지의 소작농으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성장은 인근 농촌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 노동자들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일례로 1876년 초반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35명의 한인이 거주했었던 반면, 1886년에 이르면 그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한인들 중 일부분은 아무르灣에서 어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해상육상 운송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인 노동자들은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北우수리 철도건설에 참여한 한인 노동자는 1600명이었다고 한다. 1917년에 이르면, 연해주 지역의 한인 노동자들의 수는 대략 1만에서 1만2천명에 육박했다. 이런 식으로 한인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항상 러시아와 관계를 맺어왔고, 연해주 지역의 동슬라브족과 함께 비거주지역 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인들 사이에 러시아 정교의 확산은 한국인 아이들을 위한 교구 소속 학교의 설립을 촉진시켰다. 러시아인들과의 접촉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과 러시아인 사이의 혼인은 드물었다.

러시아 내전(백군-적군간의 전쟁)과 초기 소비에트 시절에 연해주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의 소위 제3의 물결이 일어났다. 1920년대 초반에 연해주에 거주했던 한인의 수는 5만 여명에 달한다. 1923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연해주 지역의 농촌인구의 17%가 한인 이주민이었는데, 그들 중 67%는 러시아 국적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부에 있어서도 난감한 문제였다.

이 지역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갔다. 1925~1926년 사이에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학교에 한국과가 신설되었으며, '뿌칠로프카' 촌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고, 문맹타파를 위해 138개의 分所들을 설립했다. 1931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4개 학부로 이루어진 한국인 사범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8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족계 사범학교와 교육학부가 활동하고 있었다. 1936년부터 한인 아이들은 민족학교에서 다른 직업(고등교육이 바탕이 되는)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30년대 중반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들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민족 연극 극장'과 '한국 음악-연극 극장'이 문을 열었다.

1937년에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주민의 역사에 남게된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인들은 카자흐스탄과 중앙 아시아로 집단유형을 가게되었다. 극동지역을 떠나야했던 사람은 17만2천 여명에 달했다. 시민권에 있어 제약이 사라진 이후인 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인 이주민들은 극동지역으로 귀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 2. 러시아의 한인들 : 역사의 새로운 전환

이처럼 19세기 말부터 러시아에서 한인들은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922년부터 그들은 소연방 전 영토에 걸쳐 급속하게 이주하기 시작했다. 90년대에 독립국가연합 내의 한인의 수는 대략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들 중에 러시아 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자가 약 13만 명이고, 우즈베키스탄에 20만 여명, 카자흐스탄에 10만 여명, 타지키스탄에 1만3천 명, 키르기지에 1만8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독립국가연합 전 영토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등).

러시아 공화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수의 한인들이 알타이스키 지역, 북카프카즈 지역(크拉斯노다르스크 지역에 대략 3천 여명, 다게스탄에 800명 등등), 그리고 당연히 1860년대 첫 번째 이주민들이 거주했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사할린에는 4만3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연해주 지역에는 3만 명 이상이, 하바로프스크 지역에는 8천3백명, 카마크 지역에는 195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60~80년대에 러시아 내의 한인들의 자발적인 이주는 극동지역, 주로 로스토프스카야 지역, 스타브로풀스키와 크拉斯노다르스크 지역, 그리고 카바르디노-발카리아와 북오세티아 지역으로 이어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 공화국에서 그들은 가장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특히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한인들은 집단 이주가 아닌 가족단위의 혹은 작은 무리 단위로 이주하였는데, 황무지를 개간하여 참외나 양파, 다른 야채들을 재배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농민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되었다. 한인들이 참여하고 책임지고 있는 농지의 수확량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다.

최근(1996~1997)에 상주거주를 위해 러시아로 1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주했다.

## 현황 :

- 4만 명 이상의 한인이 사할린에;
- 3만 명 이상이 연해주 지역에;
- 대략 1만2천에서 1만3천 명 정도가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 1만 명 정도가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지역에;
- 6천 명 정도가 스타브로풀스키 지역에;
- 5천5백 명 정도가 크라스노다르스크 지역에;
- 1만 명 정도가 상트-페테르부르그와 레닌그라드스키 지역에;
- 3천 명 정도가 북오세티아 지역에;
- 2천 명 정도가 볼가그라드스카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인들은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떤 한 도시도 순수하게 한인들만 거주하는 곳은 없다. 기대할 만한 생산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인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볼가그라드스카야, 로스토프스카야, 니체고로드스카야, 보로네쥐스카야, 탐보프스카야, 리페츠카야 지역 등의 러시아 공화국의 서부 지역 행정부는 <러시아 내의 한인들에 대한 토지분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러시아 내의 한인과 독립국가연합의 다른 나라들의 한인에게 통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진 이래로 북카프카즈 지역은 그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었다. 이곳의 기후조건은 농사짓기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러시아 공화국 내의 한인 사회 내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30년대 극동지역에서 한인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었던 반면에, 90년대에는 똑같은 수치의 한인이 도시민, 노동자, 공무원, 인텔리 층으로 변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위 상승에로의 지향, 높은 교육수준, 높은 사회적 지위 달성을 러시아 내의 한인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이다.

러시아의 한인들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다(러시아 정교,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러시아 종교단체와의 관계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모스크바 신학교에서의 한인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으로 귀착된다. 한국의 종교단체와의 관계는 한국으로부터 러시아의 한인 사회를 위한 금전적 지원과 구호를 받고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형성된다.

## 3. 러시아의 한인들에 관한 현행법

1991년 3월에 러시아공화국에 의해서 '탄압받는 민족들의 복권 관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정의된 복권 범위는 '사회-경제적, 영토적, 그리고 민족-문화적' 복권이다.

러시아에서 진행중인 이러한 발전의 조건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복권의 가능성은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의 개념 속에 잘 드러난다. 1993년 3월 1일 '고려인들의 복권 관계법'이 러시아연방 베르호프 소비에트 의장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복권'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자유로운 민족 발전의 권리
- 타민족과의 동등한 권리보장과 현행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실현보장
- 고려인들이 옛날에 살던 러시아연방의 영토로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것

러시아공화국의 법제정에 의해서 고려인들의 러시아연방 시민권 획득은 자연히 해결되었다. 물론 한국국적을 가진 고려인들은舊소련 시절에 가졌던 자치정부의 영토는 포기해야했으며, 자신의 거주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새 법률의 어느 정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국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은 러시아연방 내에서 사는 고려인 소수 민족의 삶에 전환기를 의미했다. 그것은 탄압받는 민족의 탈피이며, 민족의 자연성의 회복이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통치를 주창한 러시아정부 내에서는 역할과 지위에 관한 어떠한 제한과 법률적 차별은 없어졌다. '고려인들의 복권 관계법'의 채택 이후에 전국의 행정기관에서는 이 법률을 실현하는 각종 조치들이 행해졌다. 러시아 민족사업부 위원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부흥에 관한 프로젝트 업무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로 진행하는 학교의 조직화와 고려인들의 민족정신의 회복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러시아 민족사업부 위원회는 모스크바에 한민족학교의 개설 제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에 러시아연방의 사범대학에서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수업, 강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세 고려 신문>(사할린), <고려 사람>(페테르부르크), <반도>(우수리스크), <아리랑>(모스크바), <고려인들>(모스크바) 등의 한국어/러시아어 지방신문들이 이 문제들의 해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 4. 러시아 내의 한인들의 사회·정치적 활동

러시아에서 민족·문화 부흥의 과정은 한인 사회의 정치적 적극성을 고취시켰다. 그 결과 10개의 지역문화 센터, 한인 연합, 그리고 러시아 한인 연합(AKP), 한인 연합 국제대회(MKKA), 통일한국 조성 연합, 국제 한인 우호·협력 연합 등이 생겨났다. 동시에 한인 여성 연합, 한인 과학기술 연합, 러시아-한인 펀드, 채육의료·예술 센터들, 전한인위원회, 이산가족 연합 등이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 연합>에 관한 러시아공화국 법령(1995)이 채택된 후, 다양한 한인 단체와 센터들의 명칭이 한인 사회 연합으로 불려졌다.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총40개 이상의 한인 사회 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스크바에만 7개의 단체가 있고,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5개, 연해주 지역에 7개, 스타브로폴스키 지역에 4개 등이 있다.

민족간 관계 확립에 있어서 주요 역할은 러시아 한인 연합(APK)의 前身인 전소연방 한인 연합이 관장하고 있었다. 1999년 1월4차 대회에서 전소연방 한인 단체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단체는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시베리아, 우랄, 포볼주, 북카프카즈, 상트-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의 여러 사회 연합들의 기초 위에 설립되었다.

한국인 정신 문화 부흥에 기초를 둔 한민족 연대, 민족적 자의식과 계몽의 각성, 민족간 우호와 상호이해의 적극적 조성, 자선사업에 적극적 참여, 한민족의 사회보장과 물질적 원조프로그램의 연구와 재정확보, 한민족 문화와 언어, 민족예술의 부흥 등등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과제 해결이 한국인 공동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1997~1998년에는 이미 1996년에 채택되었던 <민족·문화의 자치제>에 관한 러시아 공화국 법령의 실현을 위한 작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문화 성장을 형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는 별개인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국가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족 공동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법적인 요건들이 형성되었다. 러시아에서 한인 민족·문화 자치제는 다양한 단계별로(지방별, 지역별, 연방차원) 순차적으로 발생했다. 1996년 아래로 러시아공화국 내에서 21개의 지방차원의, 5개의 지역차원의, 1개의 연방차원의 민족·문화 자치제가 구성되었다.

동시에 이형근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모스크바의 <3·1>운동 문화센터는 러시아의 여러 한인 사회 연합체들과 함께 러시아의 한인 사회에 선전활동과 교육활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이 센터는 인쇄물 발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단 한국의 역사나 러시아의 한인의 역사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성과 출판 이외에 종교의 역사에 관한 주제도 다루고 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자선사업을 조직하며, 동시에 러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원조를 받으면서 기난한 한인 가족들에게 보다 전폭적인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베풀고 있다. 또한 이 센터는 한인과 다른 민족들의 강제주방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많은 <원탁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3·1>운동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5. 러시아 한인들의 국제 관계

러시아 연방의 '탄압받는 민족들의 복권 관계법'의 제정과 러시아 연방최고회의의 '러시아 내 한인들의 復權 관계법'은 지금까지 측적되어 온 많은 한인 문제들(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한인들의 문제 뿐 아니라 국외의 한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이는 한국 및 북한과의 국제 관계의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상주 혹은 임시 거주를 위하여 이주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새롭게 재고되었다. 초기에 이 문제는 대개 러시아 외무부나 (소연방내) 러시아 공화국의 민족 문제 관련 정부 위원회, 혹은 사할린 지역 행정위원회에서 관할했었으나 1990년 소비에트와 한국간의 국교수립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두 정부간의 관계의 관점에서나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관례에 상치되지 않는 새로운 민족 아주 정책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독일 국적을 가진 러시아 국민이 독일에 상주 혹은 임시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 바 있다.

국제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일련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 이미 1991년에 러시아의 대외 경제 관계부가 한국 정부와 합동으로 문화·정보 산업 센터(cultural-infomational commercial center)를 창설하겠다는 사할린 한인 협회의 제안을 지원 및 장려하기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러시아 대외 경제 관계부는 이를 통해 외화가 러시아 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러시아 한인들의 사회·경제적인 문제, 특히 구세대 한인들에게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대외 경제 관계부는 사할린한인협회의 이와 같은 제안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공식적인 정부 자료에 의하면 90년대 중반에 이미 사할린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희망하는 경우 그들에게 정착지를 나누어주고 고국으로 이주시기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안이 이미 확정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러시아는 투자에 관해 관심을 보이고 한국의 경우는 천연자원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사회적·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수는 없었다.

특히 러시아 한인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협력은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교육부는 한국대사관측과 공식적인 협력방안의 가능성을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협의에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 및 교과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들의 확보를 위한 러시아 한인에 대한 공식적 지원에 관한 현안도 포함되었다.

전라시아 한인협회는 한국의 교육부 및 서울대학교 부속 해외한인 교육기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한국어 교과서 <초급한국어 회화>와 몇 개의 카세트테이프로 이루어진 오디오자료를 퍼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곧 러시아의 몇몇 한인 밀집지역의 학교들로 보내졌으며 또한 한국어 교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서울의 해외한인 교육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어교사협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현안과 관련하여 큰 기여를 했으며 이들의 주최로 1991년 11월 1~2일 모스크바에서는 컨퍼런스가 열렸고 여기에는 한국 대사관의 공식적인 대표들과 해외인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양국간의 국제적 협력 방안들이 1993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국제 심포지움에서 논의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심포지움에서는 또한 한인들의 해외로의 이주문제와 그것이 한민족의 전민족적 일체감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심포지움은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민족간의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러시아 한인들의 자기교육과 그들의 민족의 전통과 풍습 보존에 있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한국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 특히 사할린 TV의 방송은 더 큰 의의를 지닌다. 이 프로그램들은 <인데콤>방송사(한국)와 <예브로파(유럽)> 플러스 사할린> 방송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방송의 출현은 사할린의 문화계의 큰 사건 중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90년대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가간의 화합과 협력의 발전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한인들은 자신들의 고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갔다. 계속해서 방문단들의 교류가 있어왔고 때로는 가족의 고국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한국이나 북한에 살고 있는 친자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한인 3세 혹은 4세들은 서울대나 기타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여러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때로는 러시아 연방의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의 한국과 북한 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인 이나톨리 김이나 볼쇼이 극장의 솔리스트인 루드밀라 남의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고국을 방문했다). 모스크바나 기타 러시아의 여러 지역중심지들에서는 또한 한인 단체의 작품들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

한국국적을 지닌 주민들을 강제이주시켰던 1937년으로부터 60년을 기념하는 <기억의 날> 행사는 러시아 한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1997년 9월 11일에서 19일에 걸쳐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슈켄트까지 행로를 되새기는 <기억의 열차>는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행사는 러시아 연방의 여러 정부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세계의 지지를 구하며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 6. 결론

대략 러시아 연방 영토 내의 한인들(고려인)의 현황은 이러하다. 그들은 러연방 전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경제력 성장과 러시아 민족 문화유산의 부흥이라는 국가적인 과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인들과 러연방의 다른 기타 민족들간의 관계의 증진을 위한 활동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러시아에서의 민족 문화 자치권 형성을 위한 노력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고 또한 한인들 뿐 아니라 러시아 민족, 또한 다른 기타 민족 공동체의 자치 활동 역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또한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민족의 정치적 활동력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 I. Введение

Во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аряду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образующими нациями прожив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т.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не имеющие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л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этих государств также как и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чески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общества и обогащают его своим трудом, самобытностью и культурой. Поэтому обеспечение пра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осн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гласия в обществе.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име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С принятием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й ООН Декларации о правах лиц, принадлежащих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или этническим, религиозным и языков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эта проблема подня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Декларация послужила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по защите пра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в Европе. Начиная с середины 80-х годов, в течение ряда лет в рамках Совета Европы шла разработк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договора, завершившегося принятием договорного акта Совета Европы – Рамочной конвенции 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Конвенция провозгласила защиту прав и свобод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сфе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Конвенцию подписали 36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траны СНГ приняли свою Конвенцию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 лиц, принадлежащих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 II. Кого относить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Терминология, используема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ктов 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что проблема защиты указанных этносов перестала быть

только внутренним делом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а вышл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Ни в одном и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ктов нет определения термина “национальное меньшинство”.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имеет свои плюсы и минусы и создает проблемы с выработкой кажд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своего по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формирования указанных этносов.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аждая страна, каждое государство могут иметь свое опреде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Это вполне допустимо, поскольку может отража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звития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месте с тем необходимо исходить из исторических корней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о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Как известно, оно появилось в период уси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европейских народов и должно был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факт признания прав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рисущей не только титу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и, но и другим этническим общностям, проживающим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и не имеющим в силу объективных или субъектив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во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ил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авовой формой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стал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т.е. такая форма, которая не является н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национальной, н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Вместе с тем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могут иметь сво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вне данной страны, т.е. – там, где этносы, к которым они принадлежат, являются либо титульной нацией, либо имеют свои фор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следует отличать от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связи с колонизацией Севера, Сибир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ключались территории, на которых испокон века проживали народы, которые практически сохраняли свой традиционный уклад жизни без соз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ил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спользуются дефиниции,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малочисленные этнические общности) и в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ах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коренные (аборигенные) народы,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Севера,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Севера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национальные группы и общности, этнические общности, малочисленные этнические общности Севера, культурно-этнические общности).

В действующем федераль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имеется чет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единственного термина –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к которым законодатель относит “народ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своих предков, сохраняющие самобытный уклад жизни, насчитывающие в России менее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и осознающие себ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этническими общностями”.

Трудности принят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а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условлены сложностями четк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их условиях. Давая опреде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законодатель должен недвусмысленно ответить на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 относятся ли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народы, име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или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 если относятся, то должны ли они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живать за пределами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ли поня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только на народы?
- могут ли причисляться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лица, не имеющие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 относятся ли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Учитывая вышесказанное, принятая расширительная трактовка по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к которым отнес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 постоянно и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в ин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реде субъекта РФ и не относящиеся к титульному народу данного субъекта;
- численно находящиеся в меньшинств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нного субъекта;
- имеющие гражданство РФ;
- признающие себя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ом;
- не относящие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к коренным малочисленным народа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дать следующее опреде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применимое в специф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России. Это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компактно или дисперсно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за пределами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этносреды, не относятся к малочисленным коренным народам и имеют такие устойчивые отличия, как язык, самобытную культуру, религию, объединены общим самоназванием и единым самосознанием.

### III Проблема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защиты пра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 одн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в мир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гд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170 народо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ью около 140 млн. человек.

Россия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ась как полигетн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ольшинство народов имеют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территорию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титульные» этносы представлены 23-мя народами и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лассиче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азербайджанцы, армяне, белорусы, греки, грузины, казахи, киргизы, корейцы, латыши, литовцы, молдаване, немцы, поляки, таджики, туркмены, узбеки, украинцы, финны, эстонцы и др.). Число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остигает 65.

Численность различн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в том числе меньшинств) колеблется от нескольких миллионов (украинцы) до 10 тыс. человек и менее (24 этноса). В целом меньшинства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20%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России характерно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ееся сочет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принцип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ходят 89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21 республика, 6 краев, 49 областей, 2 горо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1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и 10 автономных округов (ст. 65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з 89 равноправных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по сути, являются 21 республика (ранее автономные республики, повысившие сво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татус), 1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10 автономных округов, обладающие всей полнот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автономии.

По составу населения эти субъекты являются полигэтническими. Только в 7 республиках из 21 лица, принадлежащие к титу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яде республик большая часть титу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роживает за пределами сво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редка и иная ситуация, например, в Башкортостане, Татарстане, Туве и Якутии, где, либо доля лиц титу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елика, либо гд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большинство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Для некоторых народ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ньшинствам, с начала 90-х годов в ряде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разованы национ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единицы.

Сейчас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почти 90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автономий, 3 федеральные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ые автономии – российских немцев, корейцев и украинцев.

Успешная реал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где существует такое этническое,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многообразие, возможна лишь при наличии прочной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 документом, регламентирующим обяз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эт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гарантирует всем гражданам равенство прав и свобод,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аво граждан самим определять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выбирать язык общения, обучения и т.п.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инят ряд законов, создающих механизм реализа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атей Конституции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ных с прав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Это Законы «О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О гражданстве»,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О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 Уполномоченном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вободе совести и о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и т.д. Новый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принятый в 1996 г.,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е равноправия граждан по признаку пола, расы,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язык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мущественного и должностного положения,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отношения к религии, убеждени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а также за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возбу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совой, религиозной вражды, уни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равно как за пропаганду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и, превосходства либо неполноты граждан по признаку их отношения к религиоз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ли расов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В стадии разработки или согласования находятся законопроекты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ин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проект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мерах по недопущению разжиг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розн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роцесс укрепл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идет не только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но и на уровне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Его интенсивность создает проблемы иного свойства – а именн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одоления подчас возникающего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между федеральными и местными законами.

Главная ц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полноправ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х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интеграции общества.

Эта цель наиболее полно отражена в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утвержденной 15 июня 1996 г.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ция устанавливает следующие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 равенство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его расы,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языка, отношения к религии,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социальным группа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объединениям;
- запрещение любых форм ограничения прав граждан по признакам социальной, расо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языковой или религиоз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ейся целост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авноправие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 гарантия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щепризнанными принципами и норм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договор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раво каждого гражданина определять и указывать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без всякого принуждения;
-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и языков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мирное разреш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и конфликтов;
- запрещ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одрыв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бужд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расо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религиозной розни, ненависти либо вражд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оем заявлении от 6 ноября 1998

г. «О недопустимости действий и высказываний, осложняющи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не может и не должен становиться предметом политических спекуляц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оказал, что только на путях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и соглас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может

сохраняться единство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нашем Отечестве недопустимы действия и высказывания, осложняющ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ет любые чуждые народам России формы проя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религиозной нетерпимости и отмечает, что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взаимная поддержка, ува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всех народов были и остаются важнейшими факторами проч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Задача обеспечения полноправ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России име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и политическому экстремизму и сепаратизму». Защита пра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для России – это условие сохранения 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 ‘러시아 연방의 소수민족정책’과 ‘러시아의 한인’에 대한 토론문

유의정(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발표문은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정책’과 ‘러시아의 한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5 면으로 구성되어있는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에서는 현재 러시아 연방 내에서 소수민족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또한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이 ‘현지 소수민’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러시아의 법적 근거에 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정의되어 구분되어진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문제와 이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러시아의 헌법에 이들 소수민족들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밝히고 있는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은,

- ‘민족-문화자치’에 대한 법령
- ‘현지 소수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령
- 시민권에 대한 법령
- 교육에 대한 법령
- 대중 매체에 대한 법령
- 러시아 연방 내의 인권에 따른 권한에 대한 법령
- 종교적 자유에 대한 법령

등이 있다.

이러한 러시아 민족 정책의 주요 목적은 전 러시아 시민들의 사회적, 민족-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보장의 조건을 마련하고 사회 통합을 위하는 데에 있다고 발표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들 법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세부적인 원칙들이 1996년6월15일 ‘민족 정책 개념’이란 조항으로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내용 또한 발표문에 담겨있다.

러시아와 우리와의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욱 복잡한 민족구성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의 민족 정책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민족 정책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발표문의 내용 중 토론의 주제가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민족-문화 자치’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러시아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으로 현재 러시아 내에는 약90개의 ‘민족-문화자치’가 존재하며3개의 ‘연방 문화-민족자치’가 존재하는데 후자에는 러시아 독일인, 러시아 한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인이 속한다. ‘민족-문화자치’란 일정한 행정 등록을 거쳐 등록된 일종의 민족단체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 기준의 ‘고려인 협회’나 다른 민족 단체들과는 어떻게

구별되며, 실질적인 자치기구로서의 구조나 활동, 연방 차원에서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는다.

둘째로는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법령의 내용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우리도 이를 표본으로 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면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한인’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한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소수민족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인과 관련된 법령의 소개와 한인들의 사회, 정치적 활동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와 러시아 외 한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글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러시아 한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큼 현재 한인들이 러시아 내에서 처한 법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러시아 한인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내용과 정책 수립과정을 비교하여 국내 거주하고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화교정책

양옥금(중국 연변대)

### 머리말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국내에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중 소수민족이 55개 민족이고 소수민족인구는 전국 총 인구의 8.41%<sup>1)</sup>을 차지한다. 전국 소수민족지구에 155개 민족구역자치지방이 설립되고 그 면적은 전국 총 면적의 64.3%이다. 역사적인 원인과 현실적 경제문화의 발전차이로 하여 중국의 민족분포는 대 잡거(大雜居), 소 집거(小聚居), 교차적 잡거(交錯雜居) 상태로 형성하였고 그중 한족은 기본상 내지(内地)와 연해(沿海)지구에 거주하고 소수민족은 변경(邊境)지역과 산지(山地), 초원, 구릉지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제문화발전정도가 소수민족이 한족보다 상대적으로 후진적이고 여러 민족간의 발전정도는 아주 불균형적이다.

중국은 몇 천년의 역사과정을 거쳐 각 민족이 공동히 나라의 영토를 개척하였고 경제문화를 발전시켰으며 국내외 적들을 타파하고 통일된 나라를 창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한족과 소수민족은 서로 혜여질 수 없는 평등, 단결, 호상협조하는 민족관계로 형성하였다. 하지만 민족이 존재하면 민족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부동한 특징과 특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의 발전차이, 부동한 민족풍속과 종교신앙 등 원인으로 하여 중국에 이어저러한 비대항적(非對抗性) 민족문제가 존재한다. 민족문제는 시종 중국의 전반건설과 발전도상의 구성부분이다.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국내의 민족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한 민족정책을 제정, 실시함으로서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중국 각 소수민족의 지지와 신임을 얻었고 세계의 공인을 받았다.

중국의 화교정책이란 화교(華僑), 귀국한 화교(歸僑), 화교가족(僑眷)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실시하여 이들의 근본적인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실재문제들을 해결하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타국민과 동등하고 우월한 기본권리를 향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회지위가 크게 제고되고 사회, 가정생활이 안정되었으며 그들의 애국의식을 크게 불러일으켜 그들은 현재 중국현대화건설도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적자원으로 되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민족정책과 중국의 화교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하여 소개한다.

## 중국의 민족정책

### 1. 중국 민족사업의 조직기구

#### 1) 정부산하의 각급 민족, 종교사무위원회

이 기구는 정부기구의 구성부분인데 그 급별로는 국가급, 성(省)급, 주(州)급, 현(縣)급 민족사무위원회가 있는데 중국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생활풍속 등 제반영역의 발전과 권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 소수민족의 대변인과 실무기구라 할 수 있다.

국무원유관 부문에 상응한 민족사업전문기관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민족교육사(司), 문화부의 민족문화사(司), 상업부의 민족무역처 등 부서인데 그 부서의 업무와 소수민족과 연관하여 사업하는 부서이다.

#### 2) 각급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산하의 민족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다. 그 산하의 민족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교부(交付)한 의안(議案)을 심의(審議)하고 유관 민족문제에 관한 정부의 법규, 결정, 명령,規章을 심의하고 민족문제를 조사하고 상응한 입법제의를 제출하는 등 民族立法을 제정과정을 것을 심의 참여하는 기관인데 그 급별로는 국가급, 성(省)급, 주(州)급, 현(縣)급이 있다.

## 2. 중국의 민족정책

### 1) 민족평등, 단결정책

첫째,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민족평등단결의 기본원칙

중국정부는 일관적으로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국내 민족문제해결의 총 강령으로, 근본원칙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기본 내용은 바로: 일체 민족의 평등을 주장한다. 즉 민족이 크던 작던, 선진이나 후진의 구별이 없이 일률로 평등하다; 각 민족은 일체권리 즉 정치, 경제, 문화, 언어, 풍속,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 선진민족과 비교적 강대한 민족은 진심으로 심지어 자기의 일부 이익을 회생해서라도 실제적으로 후진민족을 도와 각 민족의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국초기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으로부터 1982년 『헌법』, 그리고 기타 많은 법률에서 민족평등의 원칙을 충분히 체현하였다. 1982년의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이 평등, 단결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수호, 발전시키며 민족에 대한 어떠한 기시와 억압이 있어서는 안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제정하였다. 그리고 전문법률과 법령을 반포하여 민족평등, 민족단결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1951년에 반포한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소수민족을 기시하고 모욕하는 의미를 담은 민족명칭, 지명, 간판, 비석에 관한 처리』; 『산거(散居)한 일체 소수민족의 평등권리를 향유할데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 실시 강요』;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등 법률, 법규는 민족평등단결정책을 전면적으로 제정하였다.

우에서 제기한바와 같이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몇 천년의 발전과정에서 민족분열의 아픔과 통일의 단맛을

<sup>1)</sup> 2000년 7월1일 제5차 전국인구조사 수치

경험하면서 강대한 내부옹집력이 형성 되였고 한족과 국내 각 소수민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에 모택동은 “나라의 통일, 인민의 단결, 국내 각 민족의 단결, 이는 우리의 사업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본보증이다”<sup>2)</sup>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역대 중국공산당과 정부지도자들은 나라통일과 민족단결의 높은 시각에서 민족의 분열과 민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둘째. 소수민족들에게 평등한 정치참여권리를 부여

민족평등정책의 핵심은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국내의 56개 소수민족은 모두 선거권과 페선거권이 있고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정부 등 국가기관에 반드시 일정한 수량의 소수민족대표 비례가 보장되고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중 소수민족대표의 비례는 특별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사실상 역대 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대표비례는 종래로 소수민족이 전국 총 인구중 차지하는 비례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민족간부양성에 대해서도 특별이 중시하였는바 특히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하여 민족구역자치지방 정부의 제1지도자와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주임 혹은 부주임은 반드시 그 지방 자치민족이 담당하고, 기타 령역에도 되도록 자치민족 및 기타 우수한 소수민족간부들을 승진시키고 채용하였는데 이들은 중국의 나라관리와 민족지역건설중에서 없어서는 안될 큰 힘으로 되여있다.

#### 셋째. 소수민족의 민족족성(族性)을 인정

중국정부는 정확한 민족평등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건국초기 다년간의 민족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을 걸쳐 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전면조사와 식별사업을 실행했는바 쓰촨린의 민족개념을 이론근거로 하고 중국 각 민족의 특징(特徵), 특점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과 현실실정을 결부하여 민족식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였는데 민족족성이 분명하면 그 민족이 크던 작던, 선진적이건 후진적이건 동등하게 단일민족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민족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식별초기 어떤 민족은 1000명도 안되었다. 이는 그때 당시와 현재 적지 않은 나라에서 사회발전단계와 인구에 따라 민족을 나누거나 작은 민족, 락후한 민족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 장기으로 통치민족과 통치계급의 시기와 억압으로하여 단일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스스로 감히 승인하지 못하던 소수민족이 이로부터 명확한 민족귀속(歸屬)이 있고 이로부터 몇몇한 민족이 되고 국가법률보호를 받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이는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중국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신임과 사회건설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 2)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각 민족의 자치권리와 공동발전을 추진하였다.

건국초기 중국정부는 어떠한 국가 제도를 제정하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실천을 거쳐 통일된 다 민족국가의 전제하에 민족구역자치의 형식으로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일련의 유관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이 정책을 실시하였다.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의 제정은 우리 당이 몇십 년내 국내 민족사업과 민족구역자치 정책의 실천경험을 충화한 기초상에서 제정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발전을 추진하는 하나의 전문 법률이다.

2) 「모택동 선집」 제5권 《인민출판사》 1977년판 368페이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이란 바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역에 구역자치를 실시하여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민족구역자치지역에서 지역특점, 민족특점에 따라 자기발전의 길을 개척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자치기관의 민족화와 자치권의 실시이다.

자치기관이란 바로 자치구(自治區), 자치주(自治州), 자치현(自治縣)의 인민정부와 인민대표대회이다.

자치기관의 민족화는 아래의 3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자치기관의 간부민족화인데 자치지역인민정부의 제1지도자와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제1혹은 제2지도자는 반드시 자치민족이 담당해야 하고, 자치기관의 기타 공무원의 비례도 자치민족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례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기관의 언어문자의 민족화이다. 자치기관이 직무를 실행할 때 그 지방에서 사용하는 1~2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동시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 자치민족의 언어문자를 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기관이 직무를 실행할 때 자치민족의 즐기는 민족형식을 중시하여야 한다.

자치기관의 자치권에 대한 규정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영역에 포함되었다.

중국 민족구역자치지방의 급별(級別)은 자치구(自治區), 자치주(自治州), 자치현(自治縣) 이렇게 3개 급별로 되여있고, 현재 5개 민족자치구, 30개 자치주, 124개 자치현(盟, 기)을 포함한 155개 민족자치구역이 설립되었다. 55개 소수민족중 45개 민족, 소수민족총인구 중 75%가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였으며 민족구역자치구의 면적은 전국 총 면적의 64.3%를 차지한다. 이외 잡거(雜居)하거나 산재(散居)하고 있는 소수민족지역에 1700여개 민족향(民族鄉)이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족구역자치임무를 기본상 완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수십 년의 실천이 증명하기로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정부가 각 소수민족의 평등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주인의 신분으로 자기민족의 내부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였다. 이 제도는 또한 민족문제 해결의 기본 정책이고 민족지역의 경제문화건설을 가속화하고 각 민족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 3)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문화를 발전시키는 정책

우리 나라 소수민족지역의 경제특점을 보면 소수민족자치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64.3%) 자원이 풍부한것이다. 즉 목축업, 농업, 수원(水源), 동물, 식물 및 지하자원 등이 아주 풍부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요인과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 상태가内地나 한족지역보다 많이 뒤떨어 졌고 발전수준이 아주 불균형하다. 때문에 민족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나라의 올바른 정책과内地 한족지역의 도움이 필요하다.

민족경제정책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민족구역자치지방에서는 지역실정과 민족특점을 결부하여 자치조례와 단행(單行)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자치권리를 실행하여 민족과 민족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개혁개방정책이다. 중국소수민족지역은 대부분 변방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15개 나라와 린접하고, 30여개의 과경(跨界)민족이 있다. 이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예하면 대외무역, 변방무역(邊境貿易), 민족무역 등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셋째, 짹짓기 지원(對口支援)정책. 이 정책은 국내에 비교적 발달한内地 각 성 시(各省市)가 비교적 후진적인 소수민족이 상대적으로 집거하고 있는 민족자치구(自治區)와 성(省)에 대한 지원과 도움인데 과학기술지원과 인재양성을 우선으로, 지원의 개발과 민족경제실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민족지역의 농업, 교통, 운수, 에너르기, 원자재, 지방무역 등 영역을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지 한족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민족지역에 인력(人力), 물력(物力), 재력(財力) 등의 효과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고, 당과 정부에서는 일련의 우월한 정책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크게 추진시켰다.

#### 넷째, 서부 대 개발(西部大開發) 정책과 흥변부민(興邊富民)정책

"서부 대 개발" 정책은 중국국무원에서 실시한 정책인데 서부는 주요하게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국 총 면적의 71%, 전국 총 인구의 28.45%, 전국소수민족 총 인구의 86%, 전국 12개 성, 자치구를 포함하였다. 이 정책은 중국의 동부와 서부간의 발전차이를 줄이고 민족지역의 경제문화를 도약적 발전을 추진하는 아주 효율적 전략적인 정책이다.

"흥변부민" 정책은 2000년 2월 중국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중국국무원이 실시한 "서부 대 개발" 정책의 보조적인 정책으로서 변방지역을 부흥시키고 민족지역을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다.

#### 4) 민족교육문화정책

중국의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문화교육수준이 매우 낮다. 전국 55개 소수민족 중 오직 19개 민족만 자기민족문자가 있는데 그 중 6~7개 민족은 사실상 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민족은 타민족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많은 민족은 문맹, 반문맹의 비례가 높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민족교육문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 민족의 특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수민족교육을 발전시켰다.

각 민족은 조건을 창조하여 자기민족의 특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여러 가지 차원의 민족교육을 꾸려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중등전문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수용어(민족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데 현재 전국의 대부분 민족학교에서는 이중언어제(雙重語言制)를 실시하는데 본 민족언어를 주언어로 수업하고 한족어과목을 설치하고 대학교 승학시 본민족언어문자로 시험을 본다.

#### 둘째, 소수민족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적극적으로 소수민족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민족지역에 12개소의 전국적인 민족대학(학원)이 있고 기타 종합대학, 전문대학, 중등전문학교가 7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반대학마다 민족반 혹은 예비반(預備班)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의 각종전문인재를 양성하기에 정열을 몰부었다.

#### 셋째, 학생모집정책(중등전문학교 이상)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응시생들에 대하여 우대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하면: 첫째, 점수를 높이는 방법. 즉 소수민족언어문자로 응시한 입시생들에게 부동한 민족과 지역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올려준다; 둘째, 명액(名額)의 우대이다. 각 민족대학이나 민족반은 소수민족에게 명액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수민족입시생으로 하여금 한족들보다 더욱 많은 입시기회를 준다; 셋째, 생활상의 우대정책인데 전국 주등전문학교 이상의 소수민족학생들에게 매월 소수민족비(費)를 지급하고 가정경제 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소수민족학생들에게 생활보조를 주고 대부금을

지불하는 등 정책을 부여하였다.

#### 5) 종교정책

중국 소수민족의 종교신앙은 민족성, 국제성, 지역성, 복잡성, 민감성 등 특점을 띠고 있다. 그리고 종교는 많은 소수민족의 사회역사, 생산, 민족문화, 풍속, 심지어 생활속에 깊이 침투되었다. 때문에 소수민족의 종교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많은 사회문제, 민족문제가 초래되는데 그 영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초래된다. 하여 건국이래 중국정부는 일관적으로 종교신앙자유 정책을 실시하였다. 1982년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국민의 종교신앙에 대하여 강박하지 못한다.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는 국민에 대하여 기시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중국 종교정책의 기본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매개공민은 종교를 신앙 혹은 신앙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무 종교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한 종교 내에서 어느 파벌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 때나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종교를 신앙하던 안 하던 매개 공민은 정치상 일류로 평등하고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종교활동이 국가행정, 사법,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Hon인을 간섭하면 안된다; 18 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박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게 하면 안된다는 등 정책이다.

모두어 말하면 중국의 민족정책은 민족평등, 단결을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원칙과 정책으로, 민족구역자치정책을 기본정책으로, 기타 정책을 여러 민족이 공동발전, 번영하는 정책으로하여 각 소수민족의 민족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특점과 풍속, 종교신앙을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교육 등 방면에 대한 가속적인 발전과 각 민족의 공동발전을 추진하여 나라의 종합국력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몇십 년의 실천을 거쳐 중국의 민족정책은 비교적 정확하고 중국의 실정에 잘 맞는 정책인바 전국소수민족의 보편적인 긍정과 세계의 공인을 받고 있다.

### 3. 중국민족정책의 분석을 통해 얻은 계시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민족관을 수립하였는가? 민족과 민족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민족문제의 해결중심을 어디에 두고 국내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민족강령, 민족정책을 제정하느냐에 달렸다. 때문에 나라지도자들은 반드시 정확한 민족관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정확한 민족관교육을 진행하여 각민족이 평등단결하고 상호협작하고 상호존중하며 상호학습하는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 민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 협애한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의 단결, 나라의 안전과 부흥을 위하여 공동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민족과 민족문제의 발전법칙을 존중해야 한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 단계 다민족국가의 민족과 민족문제의 존재는 필연적이고 장기적이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때문에 다민족나라에서는 반드시 민족과 민족문제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본국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정과 여러 민족의 사정에 알맞는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그 정책을 시종일관하게 관철 집행, 실행하여 민족간에 서로 단결하고 존중하며 서로 돋고 부축하면서 각 민족이 공동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족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중국의 화교정책

## 1. 기본개념:

한교정책에는 화교(華僑), 귀국한 화교(歸僑), 화교가족(僑眷)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다.

화교란 국외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다.

귀국화교란 귀국하여 정착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다.

화교가족이란 화교와 귀국화교들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화교, 귀국화교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그리고 화교, 귀국화교와 부양(扶養) 관계가 있는 기타 친척을 포함한다.

아래에 서술의 편리를 위하여 화교(華僑), 귀국한 화교(歸僑), 화교가족(僑眷)을 한자로 표시한다.

## 2. 중국화교사업의 조직기구:



2)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가 있는데 그 직책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위원회의 직책과 마찬가지이고 그급별로는 국가급 성(省)급 주(州)급 현(縣)급이 있다.

3) 귀국화교련합회인데 이는 민간단체로서 현급이상급에 모두 있는 常設기관이다. 이 기구의 직책은歸僑  
僑眷들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協調기관으로서 그들이 국가관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중국의  
제일 높은 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와 정치협상위원회위원에 대한 임원 선정, 화교歸僑僑眷들과  
해외교포들이 국내건설에 투자하고 기업을 꾸리며 해외와 경제, 문화,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등이다.

### 3. 중국의 화교정책

중국의 화교정책은 총체적으로 보면 많은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부동한 시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다. 아래에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정책을 화교정책과歸僑, 僑眷정책 두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한다.

### 1) 화교정책

중국정부는 해외교포를 중국이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고 21세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힘이라고 인정한다. 등소평은 “해외교포는 우리나라의 대발전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이다.”, 강택민국주석은 “해외교포는 중화민족의 보귀한 자원이다.”라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해외의

3000만 교포들의 적극성과 우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WTO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화교들의 중국과의 협작과 교류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였다.

학교정책에는 주요하게 그들이 국내에 대한 투자 정책, 그들 자신의 생존발전문제와 화인교육 문제 등이 있다.

첫째, 투자정책에는 화교들이 국내(중국)에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 특히 투자권리와 이익이고 그들에게 국제 케도에로 연결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화교들의 생존발전문제에 대한 국내 서비스이다. 그 방법은 국내나 국외에 특강, 단기(短期)양성학원, 학술세미나 등 형식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법률과 투자환경에 대해 요해하고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국내에서 知名변호사를 청해 이들에게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교들의 교두보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시켜 국내기업이 국외로 진출하여 발전시하도록 한다; 화교, 화인들에게 업무실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부동한나라, 지역과 단체의 수요에 따라 단기 학원을 꾸려 그들에게 중국요리, 침구(針灸), 중의약 등 영역의 업무수업을 시켜 그들의 해외에서의 생존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셋째, 화교들에 대한 교육인데 해외에서 화인교육을 꾸리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교원대오를 해외에 파견시키고; 화교자녀들을 위한 조국여행(中國尋根之旅)을 통해 조국의 역사, 지리, 문화, 풍속에 대한 요해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국내의 화교대학 예를 들면 기남대학(?南大學), 화교대학, 北京?文學院, 그리고 기타 ?文教育基地를 이용하여 화교교육을 시킨다.

## 2) 归僑, 僑眷에 대한 정책

1990년9월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归僑僑眷權益보호법》을 제정하고 2000년10월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귀국화교, 화교가족 권리보호법 (歸僑僑眷權益保護法)을 수개할데 관한 결정》에 대해 수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归僑, 僑眷에게 아래와 같은 권리와 우대정책을 제정하였다.

(1), 归僑와 僑眷은 현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향유하고, 공민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이들을 칼보면 안된다. 현급이상의 인민정부와 僑務를 책임진 부서, 그리고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와 지방귀국화교연합회에서는 유관부문과 잘 협조하여 이들의 학번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인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 归僑와 僑眷에게 적당한 인민대표 명액을 줄어야 한다.

(3) 彙儒, 儒眷은 법에 의해 사회단체를 설립하고 그들이 수요되는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런 사회단체의 재산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면 않된다.

(4). 나라에서는 归僑, 僑眷들을 잘 안치하여야 한다. 그들이 안치된 소속 농장 혹은 림장(林場) 지도부문에서는 이들을 도와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5).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래원이 없거나 생활상 확실이 곤난이 있는 归僑, 僑眷에 대하여  
당지 이민정부는 일정한 국제구호 지원해야 한다.

(6) 나라에서는 归僑, 僑眷들이 법에 따라 투자하고 기업을 꾸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고무한다. 특히 각급 정부는 고급기술산업을 개설하는 归僑, 僑眷을 적극지지하고 법적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7) 각급 정부는 彸僑, 僑眷에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踏僑와 踏僑자녀들, 僑眷들이 승학할 때 나라에서는 유관규정에 따라 우대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이 고등학교에 승학 할 때 다른 학생들보다 5점을 가하고 대학에 승학 할 때에는 10점을 가한다.

(9). 踏僑, 僑眷들이 해외 친지들과의 왕래와 통신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 踏僑, 僑眷들이 출국을 신청하면 유관부문에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들의 직계 친척들이 병에 위독하고 사망하였거나 해외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등 특수한 정황에 대하여 유관부문은 신청인이 제시한 유효증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라에서는 踏僑, 僑眷의 출국친척방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踏僑나 僑眷인 종업원들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출국친척방문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0). 踏僑, 僑眷들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을 시 피침해인은 유관주관부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인민법원에 기소할 권리가 있다.

(11).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이 사업차실로 인하여 踏僑, 僑眷들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이 손해 받았을 경우 상급 주관기관은 반드시 착오를 시정하도록 하고 정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가 성립될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해야 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도 踏僑, 僑眷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거나 재산 혹은 기타 경제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 혹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범죄에 속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줄여야 한다.

(12). 華僑, 踏僑, 僑眷들이 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꾸리는 것을 적극지지하고 환영한다. 국가재정부(國家財政部)와 국가세무국에서는 기업소득세에 관하여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각 성(省)에서는 자기의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길림성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기업 종류에 따라 기업이 經營되여서부터 1~3년 동안 소득세를 바치지 않는다; 폐기물을 원자재로 하는 기업은 5년간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踏僑, 僑眷들의 취업을 위하여 꾸린 기업 종업원들 중 踏僑, 僑眷비례가 60%가 넘으면 3년간 세금을 면하고 3년 후 새로 모집한 취업인수가 기업 총 인수의 30%가 넘으면 2년간 추가로 세금을 면한다.

이상의 정책을 각 지방정부에서 자기지역에 맞는 상응한 정책과 규정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아래에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를 살펴보았다.

연변은 길림성에서 踏僑, 僑眷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다. 현재 약 8300세대 27000명이 있는데 그중 96%가 북한에서 왔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상황이 비교적 차하고 생활이 빈곤하다. 때문에 연변주(州)정부 僑務사무실에서는 주내 유관업체와 연락하여 踏僑, 僑眷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첫째, 踏僑, 僑眷들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돌보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일련의 화교정책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일정한 모순이 있고 이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하여 래신래방(來信來訪)안건이 적지 않다. 연변 僑務기관에서는 이들의 실제정황으로부터 출발하고 여러 유관부문과 교섭하여 되도록 이들의 실제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둘째, 위험한 주택, 주택이 특히 어려운 踏僑, 僑眷들의 주택을 해결하였다. 1997년부터 26호의 주택을 해결하였다.

셋째, 踏僑, 僑眷들의 취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특히 踏僑, 僑眷들의 빈곤탈출사업과 취업문제를 중점으로 해결하기에 노력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救濟金을 발급하고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을 연구, 선택하여 短期학원 즉 단기적인 기본기술공부를 통해 새로운 취업출로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빨리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원은 보통 면비로 한다. 도시에서는 부부가 모두 踏僑, 僑眷일 경우 그

중 한사람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踏僑, 僑眷들에 대한 안치(安置)문제. 연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중국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북한화교들의 수가 비교적 많다. 하여 연변주에서는 조사를 거쳐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타당하게 안치하였다.

다섯째, 踏僑, 僑眷자녀들의 교육문제. 법에 따라 연변주에서는 踏僑, 僑眷자녀들이 승학시험시 점수우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僑資助學”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생활형편이 특히 어려운 가정자녀들을 도와 주었는데 2001년 1년 동안 25명의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여섯째, 적극적으로 대외 화교들과 연계하여 그들이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힘을 이바지하도록 한다. 지금 연변에 화교투자기업이 79개소가 있는데 이는 연변 외자기업 총수의 11.7%를 차지한다.

모두어 말아면 중국의 화교정책은 기본상 국내 일반국민의 일체권리를 향유할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보다 일련의 우대 정책이 주어졌다. 이리하여 실제상 華僑, 踏僑, 僑眷들의 애국심은 크게 제고되었고 그들이 나라건설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은 아주 높은바 그들은 이미 중국 현대화 건설에 없어서는 안될 큰 힘이 되었다.

#### 참고문헌:

1. 《중국민족정책독본》 <중앙민족대학출판사> 1998년 판
2. 《서부대개발과 민족문제》 <민족출판사> 2001년 2월 판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최신법률전집> 2002년 4월 판
4. 《중국2000년 인구조사자료》 <중국통계출판사> 2000년 판
5.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최신법률전집> 2002년 4월 판
6. 《中華人民共和國 踏僑僑眷權益保護法》 (2000년) <최신법률전집> 2002년 4월 판
7. 《中華全國踏僑僑眷聯合會 章程》
8.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지방세무국 문건 <吉財稅法聯字[1996]第507號> 《踏僑, 僑眷 기업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 1996년
9. 《僑務簡報》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僑務辦公室> 2002년

##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화교정책

김화선 (이화여대 여성학과)

양옥금 선생님의 논문은 주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화교정책에 대한 소개를 다룬 글이고 본인도 한민족의 이민 4 세대로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혜택을 받아 우리 글, 우리 말,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습관을 익히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양선생님의 말씀처럼 중국의 민족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잘 맞는 정책이며 세계의 공인을 받는 훌륭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양선생님은 중국 정부에서 비교적 훌륭한 소수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소수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는 첫째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민족관을 수립하였는가? 민족과 민족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민족문제의 해결중심을 어디에 두고 국내 민족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민족강령, 민족정책을 펼치는가에 관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민족문제 해결은 반드시 민족과 민족문제의 발전법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문제는 피면하기 어려우므로 국정에 맞는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시종일관하게 정책을 관철 집행하여 민족 간의 단결과 존중, 서로 돋고 부축하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한다.

중국의 화교정책에 대해 한국내에 있는 중국조선족의 현실을 결부시켜 몇 가지 질문을 구성한다면

첫째, 선생님은 “화교란 국외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다”라고 하시었는데 여기에서 “중국공민”이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華人들이 대부분 대만국적이거나 중국 대륙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화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3 천만명을 해야리는 해외 華人들 중 대부분이 이미 아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 1983년부터 중앙에서는 화교와 외국국적 화인사무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었는데 첫째는 화인을 화교로 동일시 하지 말고 화교와 화인의 국적 구별을 주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인은 외국인이지만 보통 외국인과는 동일시하지 않고 화인과 화교의 공동한 민족 감정과 이익을 고려하며 그들과 중국의 밀접한 연계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민족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같은 혈통을 가진 대한민국에 와서 “불법체류”的 신분으로 강제추방 당할 위험을 안고 사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해외에로 이민해 가는 인구도 많지만 해외로부터 중국대륙으로 들어와 정착하고 하는 화교와 화인들도 있다. 선생님께서 현재 북한에서 돌아와 연변에 정착하고 있는 화교들이 약 2만7천여명이 된다고 하시었는데 중국경제가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만약 해외 아주국의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는 華僑(중국인의 후손이)가 중국 대륙에 와서 정착하겠다고 할 경우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떤 정책적 규정이 있는지요?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조선족 불법체류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조선족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자는 의견이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조선족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중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가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중국의 화교정책도 개혁개방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른 것으로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1949년부터 1979년 개혁개방하기 이전에는 중국 대륙이 계급투쟁을 목표로 하면서 화교업무부문이 해산되었고 교포사무가 거의 정지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문화대 혁명시기에 해외관계가 있으면 특무로 몰리었는데 연변 조선족들에게는 북조선특무, 남조선 특무 등 “모자”를 써우고 타격과 배척을 받은 역사가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중심과업으로 제기하면서 경제발전의 기반을 닦는데 필요한 자금문제는 가장 큰 난제로서 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르는 각급 정부에서는 근 30년간 소홀이 대했던 화교 화인들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화교 화인들이 그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강한 경제실력을 갖춘 군체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중국사회경제발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작용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복건성과 광동성 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화교에 대해 더욱 익숙하여 심지어 문화대혁명기간인 70년대초부터 해외교포들이 고향건설에 이바지하게끔 격려하였다. 1979년초 등소평이 “경제건설을 하려면 길들을 많이 찾아 나야 하는데 외국의 자금과 기술을 인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교, 화인후예들이 중국 대륙에 와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초의 교민사무는 여전히 국내 교민사무를 위주로 하였으며 경제특별구를 성립하면서 중앙정부는 외국 자본 인입 과정에서 화교들의 작용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화교 화인 중에서 거액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거나 전문지식 등 높은 과학기술을 장악한 인재들이 중국의 경제건설에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지난 20여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해외 화인 투자와 중국 경제합작이 확대됨에 따라 화교 화인들은 중국 대륙의 발전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지원대상으로 되었다. 경제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발전전략에 의해 투자자로서 해외 화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해외 화인들이 중국 대륙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도록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정부가 해외 화인들이 거주국에서 잘 살수 있도록 배려하고 후원하는 쌍방향의 교류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 “*상해증권일보* 자본주간”은 “포부스”잡지가 선정한 “2002년도 중국대륙 100명 부호명단”을 정식공포하였다 한다. 여기에 조선족기업인 石川慶이 제 68 위에 올랐다. 사실상 중국조선족들은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대도시로 이동하여 많이 살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조선족들의 경제적 실력도 갈수록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생님께서는 10년 혹은 20년이후 중국조선족이 중국내에서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특히 북한 화교들에 대한 연변조선족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운 좋은 기회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일본의 재일코리안 정책 및 외국인 정책

송승재(재일한국 청년연합)

### 1) 재일코리안 형성사-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식민지지배

재일코리안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그 커다란 이유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지배와 크게 관련이 있다.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1910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토지와 쌀을 일본에 의해 빼앗겨 생활수단을 잃어버린 사람이 직업을 구하려고 일본으로 건너온 경우도 있고, 강제연행이라는 형태로 강제적으로 일본에 이끌려 온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살아온 조선인은 1945년 당시에 240만명이 되었다. 해방이후, 일본에 살아온 많은 조선인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약60만명의 조선인이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을 재일코리안으로 부르고 싶다.

이러한 경위로부터도 분명하게 Old Timer 재일코리안은 모두가 대한민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되기전에 해외에 살게 된 해외동포이다.

### 2) 재일코리안의 정의와 구분, 통계로부터 본 재일코리안

재일코리안의 일본에서의 국적을 설명할 때에 소위 '조선적'이라는 것에 관해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조선이라고 하는 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재일코리안이 존재한다. 통계상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약10만명 정도라고 한다. 그들이 왜 조선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은 1947년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 국적란에 일률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표시에 따라 기재되었다. 이때 조선은 한반도전체를 가리키는 기호가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그 이후 일본정부와 한국과의 국교가 수립되게 됨에 따라 한국이라는 국적은 일본정부는 인정함에 이르렀다. 한편 국교를 수립하고 있지 않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적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바꾸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적을 고를지 조선이라는 기호를 고를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서 현재까지도 외국인 등록시에 조선이라는 기호를 선택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이 존재한다. 이것이 소위 조선적이라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위 조선적의 사람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적보유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출신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1947년 일본정부에 의해 부여받은 조선이라고 하는 기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외국인등록법사의 표시에 의하면 '조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재일코리안의 작가 김석범씨는 조선이라고 하는 기호는 통일조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기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사람은 재일코리안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조선이라고 하는 기호보유자를 여기에서는 조선표시보유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상에서 정리하였듯이 외국인등록법상 한국이라고 하는 국적 혹은 조선이라는 기호를 보유하며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사회속에서 살아가는 Old Timer로서의 재일코리안이 2001년 현재 632,405명이 있다. 그안에 일본의 식민지지배결과 일본에 살게된 자손(특별영주자)= Old Timer로서의 재일코리안이 496,986명 존재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1990년 이후 일본에 새롭게 살아온 사람이 된다. 근래에 일본의 재일코리안 인구변화의 특징은 특별영주자가 매년 1만명씩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한편 New Comer의 한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은 이 63만명 뿐만이 아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코리안이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 일본정부는 국적제도에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고로 외국인부부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아이에게 일본국적이 부여될 리는 없다.

또 재일코리안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가 신청해서 일본정부가 허가함에 따라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귀화) 2) 태어나면서 일본국적과 한국적 조선표시의 이중국적보유자가 국적선택을 행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의 2종류의 방법이 있다. 1)의 방법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코리안이 현재까지 약 22만명,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2만명 존재한다.

그리고 2)의 방법이 있다. 1985년의 국적법개정에 의해 부계혈통주의로부터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일본국적제도는 전환되었다. 결과, 일본국적과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와의 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많은 이중국적보유자가 생겨났다. 이중국적을 거쳐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상 분명하지는 않다. 여러 식자들로부터 적어도 15만명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태어나면서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뿌리를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것(양친과 조부모중에 코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우리들은 half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인티데-제?로부터 더블이라고 그들의 것을 표현한다.)까지 재일코리안으로 포함시켰을 때 그 수는 100만명 이상이 되는 것이 상상되어진다.

그리고 일본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국적=민족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뿌리깊은 사회이다. 그 때문에 일본사회에 있어서는 국적을 한국적 조선표시로부터 일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똑같이 된다. 또 그러한 사고방식은 재일코리안 사회에도 뿌리깊은 것이었다. 즉 일본국적 취득자는 우리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재일코리안 사회에 있어서도 지배적이었다. 고로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재일코리안은 일본사회내에서 보이지 않는 재일코리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 3) 재일코리안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동화, 귀화, 억압, 추방정책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독립을 회복한 일본은 재일코리안에 대한 정책을 본격화시켜 간다. 당시의 일본정부의 재일코리안 정책은 동화, 귀화, 억압, 추방정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1970년대까지의 일본정부의 재일코리안정책은 억압, 추방에 기초를 둔 정책이었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이 가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권리라 할 수 있는 재류권, 사회보장, 직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자.

재류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자자손손이 걸쳐온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한조약체결 즈음, 고관이 말했다고 여겨진 다음 말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30년이 지나면 재일코리안은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독립을 회복한 일본은 패스포트를 가지지 않고 영주자격이 없는 채로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코리안 등 구 식민지 출신에 대한 법적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률(법률126호)를 제정한다. 이 법률에서 재일코리안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그 사람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사이에 계속해서 재류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본국에 재류할 수 있다(제2조6항)라고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자격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람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동시에 이 재류자격의 해당자는 1945년9월2일 이전부터 이 법률이 생길 때까지의 사이에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손으로 1952년4월28일까지 태어난 자에 한정되어지고 있다.

126호 해당자의 아이들과 손자라도 1952년4월28일 이후에 태어난 자와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전후에 일시귀국해서 돌아온 자, 폐전 후 일본에 있는 육친을 의지해서 입국한 사람들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고 특정재류 또는 특별재류해당자가 되어3년 또는3년 이내로 재류기간이 정해져서 재류기간이 지나면 재류기간의 개선을 신청하여 간신히기를 받아야만 하였다.

또 재일코리안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령상의 퇴거강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당시 재일코리안에 가해져 있던 퇴거강제사유는 20항목이상에 달해서 그 중에는 생활보호수급대상자와 정신장애자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외국인의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류외국인의 공정한 관리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재일코리안은 외국인등록법이 의무지워졌다. 이것은 일본의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등록증의 상시휴대와 지문날인의 의무가 지워지게 된 것이다.

또 이 법률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은 일본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최저한도로 필요한 안정적인 재류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인과는 다르게 품위가 손상되는 취급을 강제 받아왔다.

1965년6월22일에 일본은 한국과 한일조약을 맺고 부속협정의 하나로서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한일법적 지위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는 그때까지 존재하던 126호 특별재류, 특정재류라고 하는 재류자격 외에 한국적 보유자중 신청자에 한해 협정영주라는 이름의 새로운 재류자격이 부여되었다. 즉, (1)1945년8월15일 이전부터 신청한 때1971년1월16일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1)의 자녀로 1945년8월16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5년 이내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이후 신청한 때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상 협정영주1세대), (3), (1)(2)의 영주를 허가 받은 자의 자녀로써 협정 발효일부터5년을 경과(1971년1월16일) 한 후에 일본에서 출생한 자 (이상 협정영주2세대). 이상인 자의 영주허가가 부여되었다. 전후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영주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이 영주자격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퇴거강제 사유가 존속한 사항(4번 항목), ▼한국적자와 조선 표시 소지자 중에서 재류자격에 커다란 차이가 생겨난 일 ▼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자손손이 걸쳐온 영주권이 아니라 소위 협정영주3세대 이후의 영주자격에 대해서는 25년 후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협의를 이행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한일법적 지위협정에

의해서도 재일코리안은 안정적인 재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사회 속에서 소위3K(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노동을 떠맡으면서 살아온 재일코리안1세대와2세대는 빈곤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런 재일코리안에게 있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너무나도 텁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일코리안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가입도 불가능했다. 그 외 공영, 공단, 공사주택 입주, 주택금융공고의 대출,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복지수당 등의 지급을 일체 받을 수 없었다. 당시의 재일코리안은 병에 걸려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100%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차별은 급부행정 차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재일코리안은 외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의 전부의 공직임용 길이 막혔다.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차별은 민간기업의 채용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70년 일본의 대기업 채용시험에 일본이름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재일코리안이 한국적 보유자라는 것이 판명되자 마자, 채용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의 재일코리안의 취직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재일코리안1세대와2세대는 일본기업에 취직할 수 없어서 일본사회에서3K노동을 떠맡으며 생활을 해 온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1970년대 까지의 일본정부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정책의 기조는 재일코리안에게 생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재류자격, 사회보장, 취직 등의 흡족하게 제공하지 않아 일본사회내에서 재일코리안의 존재를 지워가고자 하는 「억압·추방」을 기조로 한 정책이었다.

#### 4) 1980년부터 1990년에 걸친 변화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에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나서였다. 1982년에는 난민조약도 비준 했다. 당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던 인도차이나의 보트파풀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미국을 시작으로 여러 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한 것이다. 즉 일본정부는 자국에 존재하는 재일코리안을 시작으로 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도 외국인을 시작으로 해서 재일코리안을 일본정부가 관리대상으로 해서 생각하며 일본사회에 있어서 외국인과 재일코리안의 인권보장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은 외국인과 재일코리안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커다란 무기가 되었다. 즉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의 비준에 따라 일본정부는 사회권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부 ? 국적조항을 철폐해야만 했던 것이다. 난민조약의 비준이전에는 출입국 관리령 24조에 의해 외국인은 한센씨병(나병) 환자, 정신장애자 및 공공부담자(생활보호대상자) 인 것을 이유로 강제퇴거(국외추방)될 가능성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외국인중 사회적 약자는 강제로 추방된다는 무서운 제도가 기본이고, 외국인중 사회적 약자에게 급부행정을 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제도가 겨우 개선되어진 것이다.

또1980년대는 지문별인거부운동이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커다란 운동이 되었다.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14세(후16세)이상의 외국인 전원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되고 있었다. 1982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 전에는3년마다 지문날인을 했고 개정 후에는5년으로 되었고 1987년 개정에는1회 원칙으로 되었다. 하지만 날인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지문날인 제도를 양심에 반한다고 거부하는 일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문 날인 거부자에게는 재입국허가(이것을 받지않고 일본에서 출국하면 영주자격이 박탈됨)를 주지않는다는 제재 조치를 했으나 지문날인 거부자는 줄지 않았다. 이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수많은 일반 재일코리안도 날인거부라는 형태로 참가하여 일본정부의 인권유린정책을 바꾸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일본사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있어 중대한 변화는 호적법 개정이다. 일본에서는 국적과 호적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1985년의 국적법 개정과 동시에 호적법도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외국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종전에는 일본국적 취득(귀화)의 큰 관문으로써 「일본성씨」가 강요되어 왔다. 하지만 이 변경에 따라 외국성 예를 들면 김, 이, 박이라는 성씨를 가진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재일코리안이 탄생하는 길이 열렸다. 이제까지 일본국적 취득은 일본성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한 저명인사로 손정희씨 등이 있다.

#### 5) 1990년대 이후의 변화~권리문제는 하드에서 소프트로

외국인이 된 재일코리안이 거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류권」, 「사회보장」, 「직업」의 문제에서 「사회보장」 문제는 1980년대를 거쳐 서서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커다란 문제인 「재류권」과 「직업」 문제가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것이 1990년대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년의 한일조약에 의해서도 정해지지 못한 협정영주3세대 이후의 재류자격의 문제가 한일간의 커다란 외교문제가 되었다. 한일간의 외교교섭 결과, 「출입국관리특례법」(입관특례법)이 199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결과 전쟁전부터 입관특례법의 시행일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재일외국인 대부분이 이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복잡세분되어 법적 차별과 불안정한 제도하에 있던 재일외국인의 재류자격은 「특별영주」라는 형태로 일원화 되어, 자자손에게 걸친 영주권이 부여되게 되었다. 또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지문날인은 폐지되고 대신에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및 가족등록제가 도입되었다. 강제퇴거제도와 재입국 허가제가 온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남았다. 또 전후 일시적으로 조국에 귀국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여전히 영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남았다. 하지만 이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재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재일코리안에게는 커다란 변화였다.

「취직」 문제도 크게 변화했다. 지방자치체의 일반사무직 채용을 계속 거절하던 일본 정부도 1997년부터 크게 방향을 전향하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 결과 일반사무직 채용을 하지 않았던 대도시에서도 차츰 재일코리안을 일반사무직에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승진의 제한(관리직 불가)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커다란 변화였다. 특히 일반기업, 대기업의 재일코리안 취직도 증가경향이 있다. 이전에는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라면 취직이 안되던 회사도 현재는 취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현재 재일코리안 권리 문제의 주축은 재일코리안이 거주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권리. 바꿔말하면 하드한 면부터 교육과 문화라는 소프트한 문제와 정치적 권리의 문제로 그 주축이 옮겨가는 중이다.

#### 6) 교육, 문화적 권리(재일코리안의 민족적 정체성 육성과제)

한편, 재일코리안의 약90% 전후가 민족이름(본명)이 아니라 일본명(통칭명)을 사용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 많은 재일코리안이 한반도에 뿌리가 있다는 것이 일본사회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뿌리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재일코리안이 지금도 많이 존재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문화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전국에서

「마당」과 「민족문화제」라는 행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문화운동의 주체는 주로 재일코리안3세였다. 한국인인 것을 숨기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며 사는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가 문화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기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는 조선총련계 민족학교(조선학교)와 한국민단계의 민족학교의 두 종류가 있다. 조선학교는 140개 정도, 한국민단계 민족학교는 4개 정도 있다. 이 학교들은 대개 수업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자 커리큘럼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일본학교교육법의 각종학교 위치일 수 밖에 없어 행정적 공적보조를 받을 수 없었고, 이들 학교를 졸업해도 학교 졸업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고로 민족학교 교육을 결정할 때는 부모는 비싼 학비 부담을, 본인은 학교졸업후 대학수험자격이 없어 이 자격을 따려면 상당한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한편 일본학교 교육법에 기초한 민족학교도 아주 적게 존재한다.(한국 민단계 민족학교중 일부) 한편 「교육목표, 내용, 방법, 교원자격, 사람수, 시설, 설비등이 ?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코리안은 전체의 10~20%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나머지는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일본학교에서는 소수인 재일코리안을 위한 교육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대한 교육은 보장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일본인 속에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지메의 걱정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외활동이지만 재일코리안의 아이들의 있을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재일코리안에게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민족학급이 재일코리안이 많이 사는 장소인 오사카를 중심으로 설치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민족강사 선생님들은 재일코리안의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고된 대우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의 제도 보장을 호소해 가는 것이 공교육 속에서 민족교육을 진행시켜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동시에 공교육의 틀 외에도 재일코리안의 민족적 정체성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재일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서는 재일코리안 청년을 대상으로 재일코리안 청년의 민족적 정체성 육성을 꾀하기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 연간 약4백명의 재일코리안 청년이 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 7) 정치적 권리(지방참정권 획득 문제)

1993년 오사카에 있는 안화전 시에서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 부여를 촉구하는 의견서」가 채택되고 나서 일본 전국에 차지체에서 같은 양식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이 운동이 중심이 되어 진행시켜온 것이 한국민단이었다. 이러한 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의 국회에서도 「정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심의가 행해지게 되었다. 여러 논의를 거쳐 「정주외국인」이 아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포함하지 않는 선거권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서 법안의 골격이 굳어졌다. 드디어 ??의 논의가 행해진 국회에서 자민당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보수세력은 「영주외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재일코리안의 일본국적 취득을 완화하여 거기에 따라 재일코리안을 일본인으로 하여 참정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취지로 구식민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국적취득 완화 특례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대항 안에 부상에 따라 현재 「영주외국인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심의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주민자치의 관점으로부터 주목되어지고 있는 주민투표의 선거인 자격을 재일코리안에게 부여하는 자치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 점은 참정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현재까지 한국적, 조선표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적 재일코리안에 대한 참정권은 부여되어지고 있지 않다. 참정권의 부여는 외국적을 보유하는 재일코리안이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 일본지역사회 만들기에 크게 공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8) 재일코리안 단체의 과제~재일의 38도선을 넘는다는 일

현재까지 일본사회의 과제를 검토하여 왔다. 다음으로 재일코리안 사회 내부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필자는 재일코리안에게는 두 종류의 다른 「38도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재일코리안 사회에 있어서 남북대립, 그리고 둘째로 증가중인 뉴커머로서의 재일코리안과 올드타이머로서의 재일코리안 커뮤니티가 분단되어져 있다는 문제이다.

첫째로 재일코리안 사회에 있어서 남북대립이라는 의미에서의 「38도선」 존재이다. 아시다시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한국민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라고 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재일코리안단체가 존재한다. 해외동포사회 속에서 가장 강하게 남북분단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가 재일코리안 사회이다.

남북이 냉전적 대립을 격하게 반복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민단과 조선총련도 격하게 대립을 반복하여 왔다. 원래는 재일코리안을 위해서 소비하여야 할 에너지가 냉전적 대립 때문에 소비되어져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조국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재일코리안 단체의 화해를 진행시켜 나가자는 생각에서 한국민단과 조선총련의 화해가 진행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 이데올로기의 관계없이 재일코리안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재일코리안의 정체성 육성 문제 등)를 공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민단과 조선총련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추구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재일코리안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 9) 또 하나의 「38도선」

: 뉴커머로서의 재일코리안과 올드타이머로서의 재일코리안

그리고 또 하나의 38선이 뉴커머로서의 재일코리안과 올드타이머로서의 재일코리안의 커뮤니티가 분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1990년 이후 한국에서 유학과 비즈니스 등으로 일본에 온 뉴커머의 수가 증대되고 있다. 그 수는 공식적인 숫자로서는 10만명, 불법장기체류자(오비스테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18만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커머의 코리안에게 있어서 올드타이머의 재일코리안 커뮤니티는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 상황이다. 뉴커머로서의 재일코리안은 지금까지 함께 모임 기회도 장소도 가지지 못하고 비록 곤란한 때가 있더라도 의지할 곳은 자기 외에는 없었던 것이 현 상황이었다. 그러한 중 뉴커머로서의 재일코리안에 의한 재일한국인연합회가 2001년5월20일 발족했다.

재일한국인연합회는 그 결성 선언문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먼저 한인회는 뉴커머 한국인의 친목과 협력 의장이 된다. 외국생활 중에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한편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여 간다. 다음으로 한인회는 뉴커머 한국인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뉴커머 한국인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고지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 때문에 법적 제도적 지원을 행하는데에 힘을 쓴다. 또 한인회는 일본사회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친목행사를 전개하여 더더욱 한일교류의 실질적인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

이런 과제는 올드타이머로서의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와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커머로서의 재일코리안과 올드타이머로서의 재일코리안의 협력, 협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금후로는 더 풍부한 재일코리안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양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과 협동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문제

### 1) 일본에 있어서의 소수민족과 외국인 그 범주의 차이

일본에는 2001년 말 현재 1,778,462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632,405명이며, 인구 구성비는 35.6%이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80~90%가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였다. 이러한 인구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1990년대까지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올드타이머로서의 재일코리안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여러 외국으로부터 일본의 외국인이 오게 되었다. 1994년에는 전 외국인에서 점하고 있는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의 비율이 50%를 밟들게 되었다. 급격한 변화이다.

이러한 일본사회 속에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외국인이 있는 한편 일본사회 속에서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민족도 존재한다. 그것이 아이누 민족이다. 또 오끼나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수민족의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다. 아이누 민족이란 북해도의 원주민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일본정부의 식민지화 정책이 진행되어 북해도로 이주하는 자가 증가하였다. 본토에서의 이주자는 원래 살고 있던 아이누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어서 아이누 민족은 점차 생활이 곤궁해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00년에 「북해도 구토인 보호법」을 제정하여 아이누 사람들을 일본국민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부여하여 농업을 장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 생활보조, 교육 등의 보호대책을 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인의 이주자에게 대량의 토지를 배분한 후에 새롭게 부여할 양호한 토지는 적어서 부여받은 토지도 그 대다수는 개간되지 않고 물수되기도 하고 전후에 농지개혁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토지가 강제로 매수되어지기도 하였다. 근세, 근대에 있어서 아이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수탈과 지배, 동화정책=아이누민족 말살정책의 근거가 된 「북해도 구토인 보호법」은 1997년에 「아이누신법」가 생길 때까지 폐안이 되지 못했다.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소수민족인 아이누 민족과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이주노동자와 재일코리안은 일본국적의 유무에 의한 제도적인 차별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아이누 민족을 동화하여 말살하려고 한 생각은 재일코리안을 동화하여 말살하려고 한 생각. 그리고 분명한 타자인 이주노동자를 처음으로 하여 외국적 보유자를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근저에 흐르는 일본사회의 배타성과 「단일민족국가관」이라는 면에서 아주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 2)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인구동태

전술한 바와 같이 2001년 말 현재 1778462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다. 2000년 말에는 1686944명이었는데, 1년간 약 9만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된다. 국적별로 내역을 보면 한국적, 조선표시 보유자 이외로는 제2위가 중국으로 381225명(외국인 구성비 21.4%), 제3위가 브라질로 265,962명(15%), 제4위가 필리핀으로 156,667명(8.8%), 제5위가 폐루로 50,052명(2.8%)이다. 제2위의 중국은 구식민지 출신자를 시작으로 화교로서 일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증가경향이 되는 것은 전쟁시에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인 고아의 자손들이다. 제3위의

브라질이 많은 이유는 브라질에 이주한 일본인계의 자손이 대다수이다. 제5위의 폐루도 똑같이 일본인계의 자손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이 1778462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류자격을 보유하는 외국인이다. 이 이외에 재류기간이 끝나서 불법장기체류 상태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 약 22만명이라고도, 28만명이라고도 한다. 합계를 하면 일본에는 약 2백만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일본 국적 보유자의 인구가 1억 2천만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구의 1%를 넘어서 벌써 2%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된다.

### 3) 새로운 입관정책의 전개

2000년 3월 24일 법무성은 「출입국관리계획(제2차)」을 고시,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의 특징은 첫째로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통신, 운수수단의 발전과 경제시스템의 자유화의 진행에 의한 지구화가 현저한 현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응하는 일, 둘째로 「우리나라 사회는 낮은 출산률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2000년대부터 예측되어지고 있는 인구감소, 거기에 동반하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화와 「특히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러한 시대에 있어야만 할 자세를 전망하여 우리나라로서의 대응방법을 검토,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서 이번 계획에 있어서는 그 점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이주노동자의 수용 기조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은 21세기를 향한 본격적인 「이주노동자의 수용」을 향해 한편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라는 사회방어와 치안관리의 시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대책의 실시」로써

(1) 적발의 강화, (2) 수용시설의 활용과 조기송환, (3) 내외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의 확립으로서 경찰, 노동성, 해상보안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주창하고 있다. 또 「인권존중의 이념 하에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외국인의 수용을 추진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이상 실현에 공헌하고, 또 일본인과 외국인이 마음속 깊이 공생하는 그런 사회 실현을 목표하여 간다.」는 것으로서 출입국관리정책상 처음으로 「인권존중」의 이념과 「공생사회」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의 원활한 실현」에 관하여 첫째로 아이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자와 기능자의 한층 적극적인 수용, 둘째로 농업, 수산가공업, 호텔업 등의 대상직종의 확대를 전망한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의 적정, 원활한 추진, 한층 더 충실히」를 서술하여 특히 기능실습제도를 독립시킨 「재류자격」으로서 창설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재류 외국인의 정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혈통주의」에 의한 「일본인계 가족」을 중심으로 정주화를 원활화시키는 것, 「불법체재자」라도 일본사회에 깊은 유대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선느 인도적인 관점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인정하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지구화라는 경제정책과 낮은 출산률, 고령화라는 인구정책으로부터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수용」 기조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존중」과 「공생사회의 실현」이 처음으로 주창되고 있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불법체재자」에 대한 사회방위와 치안대책은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요컨데 기본계획은 국익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외국인이 일본사회 속에서 어떤 생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특히 생활해 가는데 불가결한 「사회보장」, 「직업」이라는 경제문제와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4) 내국인의 경제문제

외국인은 일본사회속에서 최저변의 계층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소위3K노동을 떠맡은 것은 옛날은 재일코리안이지만 지금은 외국인노동자이다. 혜택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 또 근년에는 「외국인 연수생, 기능실습생」라는 형태로 외국인을 수용하여 그들을 중소영세기업에 파견하여 값싼 노동력으로써 활용하는 것과 함께 잔업의 강제, 임금의 중간착취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있어 원래 대로라면 그 지침대가 되는 것이 각종 사회보장이다. 하지만 이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외국인이 수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보호제도는 1990년에 후생성의 구두통달에 따라, 그 이전은,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방치할 수 없음」 경우에는 널리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관계없이 현재는 영주자, 정주자 이외에 외국인으로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은 상시고용의 실태가 있으면 재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짐에도 관계없이 사업소측의 「저임금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라는 바램으로부터 본래 가입시켜야만 하는 외국인을 미가입인 채로 방치하고 있는 사업소가 수많이 존재한다. 이처럼 정규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더라도 일본의 사회보장제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외국인이 수많이 존재한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일본사회의 일체의 사회보장제의 대상외가 되어 일체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 5) 외국인의 교육문제

외국인의 교육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001년 말 현재 취학기가 된 (6세에서 15세)의 외국인 자녀는 117,562명 존재한다. 내용을 보면 한국, 조선포시 보유자가 47,086명, 브라질이 23,022명, 중국이 21,296명이 되고 있다. 이 취학적령기인 아이들 중 일본어 교육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19,250명 존재한다. 내용으로 포르투갈어 모국어자가 7,518 명이며 1위이다. 이하 중국어 5,532명, 스페인어가 2,405명으로 이어진다.

외국인 자녀에 있어 일본어 습득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열려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의무교육을 받는 외국인 자녀에 있어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본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본어 교육은 적은 교육이며 모국어를 「문제로서의 언어」로 보고 있다. 즉, 일본어 습득을 방해하는 언어로써 모국어를 금기시 하고 협오하는 풍토가 일본교육현장에 있다. 그 풍토가 일본어 습득의 레벨을 넘어서 일본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형성하여 모국어가 커다란 역할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이제까지처럼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일본의 의무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일본인학교의 자신의 자녀를 다니게 하지 않고 민족 공동체가 건설한 학교에 자신의 아이들을 다니게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브라질인 학교가 늘고 있다. 브라질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곳만 해도 20군데 학교에 달하여 소규모인 학원같은 것을 합하면 그 이상이 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브라질인 학교도 조선학교와 똑같이 각종학교 취급이 되어 전술한 바와 같은 조선학교와 똑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해외 일계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 일계는 일본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 및 재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문제에 관하여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외국에 사는 일본인 및 외국적을 취득한 일계에 대한 정책을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 1) 해외 일계인의 현재(현주소)

일본의 해외 이주는 1868년의 하와이 이주로부터 시작해서 약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자는 전전(1945년 이전)에 약78만 명, 전후(1945년 이후)에 약26만 명으로 총104만 여명에 이릅니다. 이주자 및 그 자손인 일계인은 브라질의 약130만 명(추정 인원수, 이하 동일한) 및 미국의 약100만 명을 비롯하여 미 대륙을 중심으로 추정하면 약250만 명 가량입니다. 그 중57.2%에 해당하는 약145만 명이 중남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 일계인을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일계인이란 일본국적을 가진 영주자(원칙적으로 해당 재류국부터 영주권을 인정받고, 이중국적을 포함하는 일본국적을 갖는 사람) 및 일본적을 갖지 않지만 일본인의 혈통을 가진 귀화1세2세3세까지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일본외무성 영사 이주부 정책과 「해외 재류 일본인수 조사 통계」에 의함)

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일본에서 외국적을 갖는 해외 일계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큰 기준은 혈통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해외 이주는 1868년의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일본이라는 국민 국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자손은 기본적으로 해외 일계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해외 일계인의 현재와 새로운 경향

해외의 일계인 사회는 세대 교체에 의하여 일본계2세에서4세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현지 사회로의 동화가 한층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획득하지 않고, 일본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일계인이 늘어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분야에서 기술과 기능을 갖고 이주한 이른바 「신1세」나 학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새로운 이주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해외 일계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로(취업) 일계인의 수가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외무부나 법무부 등은 이른바 취로 일계인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3) 일본 정부의 해외 일계인 정책에 관해서

해외 일계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외무부 안에 있는 영사이주부 정책과 입니다. 이 영사이주부가 일계의 정착 안정을 위한 원호나 그 자손들의 일본 초청 사업 등 일계인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외무장관 자문기관으로서 1955년에 설치된 해외 이주 심의회가 일계인 정책에 관한 검토를 해왔지만, 일본의 중앙부처의

개혁에 의해서 2001년부터 해외 교류 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외 교류 심의회는 해외 일계인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영사업무 서비스를 실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검토 △해외 일본인 안전 대책의 추진과 위기 관리 대응 능력 강화 △재일 외국인-일계인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0년의 해외 이주 심의회 제74회 총회에서는 해외 일계인 정책의 이념으로써 「우리 나라의 기본 외교 정책은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유지에 기여하고, 이로써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해외 일계인은 거주국 및 우리 나라의 쌍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는 존재이고, 일계인의 거주국에서의 활약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유형 무형의 재산입니다. 일계인 사회에 있어서 거주국 사회로의 동화와 공헌은 기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이를 달성하는 가운데 일부 일계인 사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일계인의 요망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일계인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던 협력 지원이 일계 사회의 지위 향상과 일본 이해 및 우리나라의 이미지의 향상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일계인 및 일본인계 사회와의 협력은 우리 나라의 외교 정책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명시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고려될 점으로써 해외 일계인 사회의 형성의 경위나 특징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치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원」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는 호혜적인 「협력」이라는 의식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4) 해외 일계인의 출입국 및 노동에 관한 정책과 법률

1990년에 출입국관리법(입관법)이 개정되고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 일계인에게 주어지는 일본에서의 재류 자격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계인에게 주어지는 재류 자격에 관해서는 살펴보면, 해당 일계인 2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적을 가진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본인이어서 출생한 사람으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이 부여되었고, 3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일본국적을 가진 경우)의 외국인 대해서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는 입관법에 의한 「취로(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인 노동만이 인정되고 있고, 「기술」「기능」「교육」등 전문적 지식, 기술, 기능을 살리는 노동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 이 재류 자격에는 재류 기간의 제한(1년 또는 3년)이 있지만, 노동활동에 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주 노동자와 해외 일계인과의 재류 자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67만 명(영주자는 제외, 이른바 오바스테이 취로자 등 (불법체류노동자 포함) 가량)이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진 일계인은 약22만 명입니다.

일본국적을 갖는 해외 일계인의 출입국은 일본에 사는 일본국적을 가진 일본인과 같습니다.

### 5) 일본의 재외 국민 참정권의 현상과 과제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적을 가진(이중국적을 포함) 해외 일계인과 일본국적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일계인의 경우가 다릅니다.

일본국적 없는 해외 일계인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본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해외 일계인 중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일본에서의 재류 자격을 갖고, 일본에서 사는 해외 일계인 대해서도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국적을 갖는 해외 일계인에 대해서는 1999년으로부터 참정권이 일부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은 없이 선거권만을 보장하는 참정권이고, 게다가 지방 선거나 국정 선거의 선거구 선거에도 적용되지 않고 국정 선거의 비례구에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정주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모두 부여되었습니다.

일본국적을 가지는 일계인 참정권에 관해서 외무부의 외곽 단체 재단법인 해외 일계 협회가 주최하는 해외 일계인 대회의 참가자 등은 선거 등록의 신청 및 투표 절차의 간소화 △재외 선거구의 창설, 선거구 선거에의 참가 등이어서 실현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6) 해외 일본인계에 대한 사회 보장

해외 일계인의 고령자에 대한 노령 복지 연금의 지급이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법률상으로는 노령 복지 연금의 지급에는 일본에서의 거주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가진 채 해외에 살고 있는 일계인은 노령 복지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폐포자에 대해서 지급된 폐포자 건강 보험의 혜택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재외 폐포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한 폐포자에 대한 폐포자 건강 보험의 적용 또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해외 일계인에 대한 사회 보장은 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 7) 해외 일계인의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2002년에 개최된 제43차 해외 일계인 대회 참가자 요망서에 의하면 「세대 교체가 진행된 해외 일계인 사회에 있어서 현재 최대의 과제는 각 세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구심력 즉 매력이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국가 지역에 흩어져있는 일본계 사회의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계 사회의 차세대인 청소년 특히 리더 층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주목을 받는 일본계 사회의 구축 또는 일본인계로서의 자각과 일본계 사회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어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일본 문화와 전통의 유지하는 일본인 마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외 일본인계의 요망을 받고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있어서 일본어 교육 및 일본어의 보급에 관계 기관이 협력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아주자 지원의 일환으로써 국제 협력 사업단이 일본어 교육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현지의 필요에 입각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의 개발하고, 현지 일본어 매스미디어에의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일본어 교수법에 근거한 현지국 국민의 일본어 교사 육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어 학습 메리트(학습 의욕 혹은 학습 동기)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일본어 능력이 있는 일계인들의 일본-거주국 쌍방에의 고용촉진이라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8) 일계인 사회와의 폭넓은 인적 교류의 촉진

정부/민간/자치체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초청사업을 한층 확대하고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학 지도 등을 할 외국 청년을 유치하는 JET 프로그램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 이 여러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의를 크게 평가해서, 이 사업에 일본계 청년의 참가 촉진 또는 이 사업을 참고로 하여 일본계 청년의 어학 능력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계 사회를 포함한 중남미의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국제 협력 사업단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자원봉사자 파견 사업 즉 일본계 사회 청년 자원봉사 및 일본계 사회 시나어 자원봉사자 파견 등입니다.

#### 9) 와국국적을 갖는 해외 일계인 국내 거주의 현상과 일본 정부에 의한 정책

와국국적을 갖는 해외 일계인의 노동 활동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일본국적의 일본인들이 꺼리는 3K노동(3D업종)에 종사하는 등 노동 조건은 열악한 편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와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는 이주노동자로 보장받는 수준입니다. 교육의 경우도, 일본의 학교 교육 가운데 일본어 교육만 보장되므로, 일본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단지 적용 교육으로 모국어를 「문제로써의 언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어 습득을 방해하는 언어로 모국어를 피하는 풍토가 일본의 교육 현장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일본어 습득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10) 정리

일본국적을 갖는 일계인에 대한 사회 보장과 참정권의 보장의 관한 일부를 제외하면 일본에 사는 일본국적자와 거의 비슷한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와국국적을 가진 일계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와국인으로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계인이 아닌 이주 노동자와 비교하면 약간의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노동활동에 대해 제한이 없이 재류자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점은 관해서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의 관점이라는 점을 비판하는 NGO 관계자도 많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외무부 내에 해외 일계인 정책을 통괄한 부처를 두고 해외 일계인을 위한 처우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육성의 문제 등 일본에 사는 일본국적자와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일본에 사는 와국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키우는 것이나 와국국적을 가진 일계인이 와국에서도 자기의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무대응이나 냉담한 자세를 비교한다면 대조적입니다.

# 日本の在日コリアン政策及び外国人政策

2002.11.23~25 :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発題：宋勝哉(在日韓国青年連合)

## ■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日本政府の政策

### 1)在日コリアン形成史～日本帝国主義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

在日コリアンが日本に居住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大きな理由は、日本による朝鮮半島植民地支配と大きく関係がある。韓日併合条約により1910年以降、日本の植民地となった朝鮮半島から数多くの人々が日本に移住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中には、土地や米を日本によって奪われ、生活手段をなくした者が職を求めて日本に渡ってきた場合もあれば、強制連行という形で強制的に日本につれられてきた場合もある。こうした理由で日本にやって来た朝鮮人は、1945年当時で240万人になった。解放以降、日本にやって来た多くの朝鮮人が祖国に再び帰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ながら、様々な理由から約60万人の朝鮮人が祖国に帰ることではなく、日本で定住することを選択する。こうした経緯を経て日本に住むようになった朝鮮人を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と呼ぶことにしたい。このような経緯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はすべてが、大韓民国政府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が樹立する前に海外に住むようになった海外同胞である。

### 2)在日コリアンの定義と区分、統計から見る在日コリアン

在日コリアンの日本における国籍を説明するときに、いわゆる「朝鮮籍」というものについ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外国人登録法により「朝鮮」という「表示」を記されている在日コリアンが存在する。統計上は明らかではないが、約10万人ほどと言われている。彼らがなぜ、「朝鮮」という「表示」を持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歴史的に説明しなければその意味が分からぬ。日本に住むようになった朝鮮人は、1947年外国人登録令により、国籍欄に一律に「朝鮮」という表示によって記載された。このときの「朝鮮」は朝鮮半島全体を指す記号とされた。1948年大韓民国政府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が樹立され、その後、日本政府と韓国との国交が樹立されることにより、韓国という国籍を日本政府は認めるに至った。一方で、国交を樹立していな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国籍表示は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の立場を現在まで日本政府は崩していない。そして、韓国という国籍を選ぶか「朝鮮」という記号を選ぶかは本人の希望によるものとされたので、現在まで外国人登録時に「朝鮮」という記号を選択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が存在する。これがいわゆる「朝鮮籍」の人々なのである。このような歴史を振り返ると、以下のようなことが分かる。つまり、いわゆる「朝鮮籍」の人々、イコー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国籍保持者ということを意味しないのである。彼らは朝鮮半島出身者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1947年に日本政府によって与えられた「朝鮮」という記号を継続して保持している人々である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そのために外国人登録法上の表示において、「朝鮮」を保持している人の中には、当然、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支持する考え方で保持している人もいるが、そのような考え方を全く持っていない人もいる。在日コリアンの作家、金石範氏は「朝鮮」という記号は「統一祖国」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だから「朝鮮」という記号を保持しているとの考え方である。このような考えの人は在日コリアンの中に少なからず存在する。このような「朝鮮」という記号保持者をここでは「朝鮮表示保持者」と呼ぶことにする。

以上整理したように、外国人登録法上、韓国という国籍或いは「朝鮮」という記号を保持し、日本国籍を保持せずに日本社会の中で生きている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が2001年末現在、632,405人いる。そのうち、日本の植民地支配の結果、日本に住むようになった子孫(特別永住者)=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が496,986人存

在する。残りの人々は、主に1990年以降日本に新たにやって来た人々になる。近年における、日本の在日コリアン人口変化の特徴は、特別永住者が毎年1万人ずつ日本国籍を取得する一方、ニューカマーの韓国人が年々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さて、日本に住む在日コリアンはこの63万人のみではない。日本国籍を取得した在日コリアンがこれにプラスされる。日本政府は国籍制度に生地主義ではなく、血統主義を採用している。ゆえに、外国人夫婦が日本で子どもを生んだとしても、その子どもに日本国籍が与えられるわけではない。

さて、在日コリアンが日本国籍を取得するためには、1)韓国籍・「朝鮮表示」保持者が申請し、日本政府が許可することにより日本国籍を取得する方法(帰化)、2)生まれながら、日本国籍と韓国籍・「朝鮮表示」の二重「国籍」保持者が「国籍」選択を行い、日本国籍を取得する方法の二種類の方法がある。1)の方法で日本国籍を取得した在日コリアンが現在まで約22万人、その家族まで含めると約32万人存在する。

さて、2)の方法である。1985年の国籍法改正により、父系血統主義から父母両系血統主義へと日本の国籍制度は転換した。結果、日本国籍と韓国籍・「朝鮮表示」保持者との結婚により生まれた子どもの中に数多くの二重「国籍」保持者が誕生する。二重「国籍」を経て、日本国籍を取得した者が何人いるのかについては統計上明らかにはならない。様々な識者は少なくとも15万人以上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また、生まれながらに日本国籍を有しているが、ルーツを朝鮮半島に持つもの(両親や祖父母の中にコリアンが含まれているものー私たちハーフという言葉に対するアンチテーゼからダブルと彼らのことを表現するー)まで、在日コリアンとして含めたときその数は100万人以上になることが想像される。

さて、日本社会は「単一民族国家」という考え方、そして、国籍=民族という考え方方が根強い社会である。そのため、日本社会においては「国籍」を韓国籍・「朝鮮表示」から日本に変更することは、コリアンという民族性を放棄することとイコールになる。また、このような考え方方は在日コリアン社会にも根強いものであった。つまり、日本国籍取得者は我が民族(コリアン)ではないという考え方方が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いても支配的であった。ゆえに、日本国籍を保持する在日コリアンは日本社会の中で「見えない在日コリアン」と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 3)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日本政府の政策～同化・帰化・抑圧・追放政策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より独立を回復した日本は、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政策を本格化させていく。当時の日本政府の在日コリアン政策は「同化・帰化・抑圧・追放」政策と言われている。1970年代までの日本政府の在日コリアン政策は中でも「抑圧・追放」に基調をおいた政策であった。社会的弱者になることが多い外国人が、居住国で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不可欠な権利とも言える「在留権」「社会保障」「職」の問題を中心に、日本政府の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政策を眺めてみる。

在留権に関する日本政府の基本スタンスは、子々孫々に渡る永住権を与えな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日韓条約締結の際、高官が語ったとされる次の言葉がそれを象徴している。「30年も経てば、在日コリアンは日本国籍を取得するようになり、この世の中に存在しないようになるだろう。」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より独立を回復した日本は、パスポートを持たず、永住資格がないままに日本に住んでいる在日コリアンなど、旧植民地出身者に対する法的地位を定めるための法律(法律126号)を制定する。この法律で在日コリアンは「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の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が決定されるまでの間、引続き在留資格を有することなく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第2条6項)と定められた。しかしながらこの資格は「法律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者の在留資格及び在留期間が決定されるまでの間」という暫定的なものに過ぎなかった。同時に、この在留資格の該当者は、1945年9月2日以前からこの法律ができるまでの間、継続して日本に在留している者、または、

その子孫で 1952 年 4 月 28 日までに生まれたものに限られている。126 号該当者の子供や孫であっても 1952 年 4 月 28 日以後に生まれた者や、戦前から日本に居住していたが戦後一時帰国して戻ってきた者、敗戦後日本にいる肉親を頼って入国してきた者たちはこれに該当せず、特定在留或いは特別在留該当者となって、3 年または 3 年以内に在留期間は決められていて、在留期間が過ぎると在留期間の更新を申請し、更新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また、在日コリアンは外国人として、出入国管理令上の退去強制命令を受ける対象となった。当時在日コリアンに加えられていた退去強制事由は 20 項目以上にものぼり、その中には▼生活保護需給対象者や▼精神障害者なども含まれていたのである。また、「外国人の居住関係及び身分関係を明確ならしめ、もって在留外国人の公正な管理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外国人登録法により在日コリアンは外国人登録を義務付けられた。これは、日本の住民登録とは異なり、登録証の常時携帯や指紋押捺が義務付けられた。また、この法律に違反したものは刑事罰が付されることとなつた。

このように在日コリアンは、日本社会の中で生きていくうえで、最低限必要な安定的な在留資格すら与えられず、外国人ということで、日本人とは異なる品位を傷つけられる取り扱いを強制されてきた。

1965 年 6 月 22 日に日本は韓国と「韓日条約」を結び、付属協定の一つとして在日コリアンの法的地位を定める「法的地位協定」を締結した。韓日法的地位協定では、それまで存在していた、126 号・特別在留・特定在留という在留資格の他に韓国籍保有者のうちの申請者に対して、「協定永住」という名の新たな在留資格が与えられ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1)、1945 年 8 月 15 日以前から申請のとき (1971 年 1 月 16 日) まで引き続き日本に居住している者(2)、(1)の子で、1945 年 8 月 16 日以降、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 5 年以内に日本で出生し、その後、申請のときまで引き続き日本に居住している者 (以上、協定永住一世)、(3)、(1)(2)の永住を許可された者の子として、協定発効の日から 5 年を経過 (1971 年 1 月 16 日) した後に日本国に出生した者(以上、協定永住二世)、以上の者に永住の許可が与えられた。戦後、日本政府が正式な永住資格を与えたのはこれがはじめてであるが、この永住資格にも数多くの問題点があった。つまり、▼退去強制事由が存続したこと(4 項目)、▼韓国籍者と「朝鮮表示」保持者の間で在留資格に大きな差異が生まれたこと▼そして、何よりも、子々孫々に渡る永住権ではなく、いわゆる協定永住三世以降の永住資格については、25 年後までに韓国政府の要請があれば協議を行うことが定められているだけであった。このように、韓日法的地位協定によっても在日コリアンの安定的な在留資格は与えられなかつたのである。

次に「社会保障」について眺めてみる。日本社会の中でいわゆる 3K(きつい、汚い、危険)労働を担いながら生きてきた在日コリアン一世や二世世代は、貧困の中での生活を強いられている場合が非常に多かつた。そういった在日コリアンにとって、日本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は喉から手が出るくらい欲しいものであったに違ひなかつた。しかしながら、在日コリアンは 1970 年代～1980 年代まで日本政府が支給する社会保障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

例えば、国民健康保険への加入ができなかつた。国民年金への加入もできなかつた。そのほかには、公営・公団・公社住宅への入居、住宅金融公庫の貸し付け、児童手当・児童扶養手当・福祉手当などの支給を一切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当時の在日コリアンは、病気にかかっても国民健康保険がないため、医療費を 100% 自ら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な差別は給付行政からの差別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かつた。当時、在日コリアンは外国籍を有するという理由で、ほぼすべての公務就任への道を塞がれていた。このような行政機関による差別は、民間企業の採用にも大きく影響する。1970 年、日本の大企業の採用試験を、日本名で受験し合格した在日コリアンが、韓国籍保持者であることが判明するやいなや採用が取り消されるという事件が起つた。この事件は日本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への就職差別の一端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なつた。在日コリアン一世や二世は日本

の企業に就職することができず、いわゆる日本社会の中で 3K 労働を担いながら生活をしてきたのである。

以上見てきたように、1970 年代までの日本政府の在日コリアン政策の基調は、在日コリアンに対して生活するために必要最低限必要な安定的な在留資格、社会保障、就職とも満足なものを提供せず、日本社会から在日コリアンという存在を消し去ろうとした「抑圧・追放」を基調にした政策であった。

#### 4) 1980 年から 1990 年にかけての変化

そのような日本政府の政策に少しずつではあるが変化が生まれてきたのは、1979 年に国際人権規約を批准してからであった。1982 年には難民条約も批准をする。当時、世界的な問題となっていたインドシナからのボートピープルの積極的受け入れを強く求めるアメリカを始めとした諸外国からの圧力により、国際人権条約を批准したのである。つまり、日本政府は自國に存在する在日コリアンをはじめとした外国人の人権を保障するためにこのような国際人権条約を批准したのではない。ここにも、外国人をはじめとした在日コリアンを日本政府が管理の対象としてのみ考えており、日本社会における外国人や在日コリアンの人権保障を進展させるための政策が皆無であったことが表れている。

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国際人権条約の批准は外国人や在日コリアンの人権を保障するための大きな「武器」となる。つまり、国際人権規約や難民条約の批准により、日本政府はそれまで、「社会権」分野の制度に対して基本的にすべて付していた「国籍条項」を撤廃せざるを得なくなつたのである。難民条約の批准以前は、出入国管理令 24 条により、外国人はハンセン病(らい病)患者、精神障害者及び公共負担者(生活保護受給者)であることを理由に、退去強制(国外追放)される可能性があった。それまでは、外国人の社会的弱者は国外に追放するというおぞましい制度が基本であり、外国人の社会的弱者に給付行政を行うという発想は全くなかったといえる。その制度がようやく改善されたのである。

また、1980 年代は指紋押捺拒否運動が在日コリアン社会で大きなムーブメントとなつた。外国人登録法により 14 歳(後 16 歳)以上の外国人全員に指紋の押捺が強要されていた。1982 年外国人登録法改正前には 3 年ごとにそれを繰り返し、改正後は 5 年ごとになり、1987 年の改正により原則初回のみになつた。しかし、押捺に応じなければ刑事罰が与えられた。こうした指紋押捺制度を「良心に反する」と拒否した拒否者は 1 万人にも登つた。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指紋押捺拒否者には「再入国許可」(これを受けずに日本から出国すれば、「永住」資格を剥奪される)を与えないという制裁行為に出たが、指紋押捺拒否者は減らなかつた。この指紋押捺拒否運動は数多くの一般的の在日コリアンも「押捺拒否」という形で参加し、日本政府の人権蹂躪政策を変更させたという意味で非常に大きな運動であったといえる。

1980 年代の日本社会の変化を語る上で大切な変化が戸籍法の改正である。日本では国籍と戸籍が非常に密接に関係しているため、1985 年の国籍法改正と同時に戸籍法も改正されたのである。この改正により、初めて「外国姓」が認められることとなつた。従来は日本国籍取得(帰化)の大きな閑門として「日本的氏名」が強要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変更により、外国姓、例えば、金・李・朴という名前を持つ日本国籍保持在日コリアンが誕生する道が開かれた。それまでは、日本国籍取得は日本の姓を名乗るということとイコールであったのである。そのような著名人として、孫正義(そん・まさよし)氏などがいる。

#### 5) 1990 年代以降の変化～権利問題はハードからソフトへ

外国人となった在日コリアンが、居住国で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不可欠な権利とも言える「在留権」「社会保障」「職」の問題の中で、「社会保障」の問題は 1980 年代を経て徐々に解決してきたといえる。残りの大きな問題であった「在留権」「職」という問題について大きな変化を見せるのが 1990 年代である。

先に述べたように、1965 年の韓日条約によっても定められなかつた協定永住 3 世以降の

在留資格の問題が韓日間の大きな外交問題となった。韓日間の外交交渉の結果、「出入国管理特例法」(入管特例法)が1991年1月1日施行された。この結果、戦前から入管特例法の施行日まで引き続き日本に在留する在日外国人のほとんどが入管特例法の適用対象となり、これまで複雑細分化され、法的差別と不安定な制度下にいた在日外国人の在留資格は「特別永住」という形で一本化され、子々孫々に渡る永住権が初めて付与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また、大きな問題となった指紋押捺制度は廃止され、代わりに自署による本人確認の制度及び家族登録制度が導入された。退去強制制度や再入国許可制度が温存されるという問題は残った。また、戦後一時祖国に帰国して、再び日本にやってきた者には依然として永住資格が与えられていないという問題も残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この法改正により、戦後長年にわたり子々孫々にまで渡り保障される安定的な在留資格がなかった在日コリアンにとっては大きな変化となった。

「就職」という問題も大きく変化してきた。地方自治体の一般事務職への採用を拒否し続けてきた日本政府も、1997年に大きく方向を転換し、各地方自治体の判断にゆだねることになった。結果、それまで在日コリアンの一般事務職への採用を行ってこなかった、大都市でも次々と在日コリアンが一般事務職へ採用されている。ここにも、昇進の制限(管理職になれない)という制限がいまだ残っているという問題はあるがいずれにせよ大きな変化であった。一般企業特に、大企業への在日コリアンの就職も増加傾向にあるのは間違いない。以前は韓国籍・「朝鮮表示」保有者であれば就職できなかった会社も、現在は就職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こうした変化を受け、現在の在日コリアン権利問題の主軸は、在日コリアンが居住国で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不可欠な権利、言い換えるならば、ハード面から、教育や文化といったソフトの問題と政治的権利の問題へとその主軸が移りつつある。

#### 6)教育・文化的権利(在日コリアン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育成という課題)

一方で、在日コリアンの約90%前後が民族名(本名)ではなく、日本名(通称名)を使いながら生きている現状がある。多くの在日コリアンにとって、韓半島にルーツがあるということが日本社会の中で生きていくために否定的なものと感じられる場が多く、自分のルーツに否定的なイメージを持ちながら生きている在日コリアンはいまだ多く存在する。

1980年代後半から、在日コリアン社会では自発的な文化運動が非常に活発に展開された。日本全国各地で「マダン」や「民族文化祭」という名の行事が活発に展開された。こうした文化運動の担い手は、主に在日コリアン3世であった。韓国人であることを隠し、日本式の名前を使いながら生きる家庭で育った若者が、文化活動を通じて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回復していくために非常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える。

また、自らのルーツに対する肯定的認識を得るために教育の問題が非常に重要である。日本に存在する民族学校は、朝鮮総連系の民族学校(朝鮮学校)と韓国民団系の民族学校の二種類がある。朝鮮学校は140校程度、韓国民団系の民族学校は4校存在する。朝鮮学校と韓国民団系の民族学校の一部は、授業がすべてウリマルで行われており、独自カリキュラムに基づいて運営さ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その反面、日本の学校教育法外の各種学校としての位置づけしかなく、行政からの公的補助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こうした学校を卒業しても「学校卒業資格」が与えられない。故に、民族学校での教育を決意する際には、両親は高い学費の負担を、そして本人は、学校を卒業しても大学受験資格がなく、大学受験資格を得ようと思えば相当の苦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方で、日本の学校教育法に基づいた民族学校もわずかであるが存在する(韓国民団系の民族学校の一部)。一方で、「教育の目標、内容、方法、教員の資格・人數、施設・設備などが細かく定められる『1条校』の基準を満たしたうえで在日コリアンの望む教育を十分に提供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な状況がある。

民族学校に通う在日コリアンは全体の10%~20%程度に過ぎないのが現状である。残り80%~90%の在日コリアンは日本の学校に通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日本の学校では少数

者となる在日コリアンに配慮された教育を十分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現状である。ウリマルやウリ文化に対する教育は保障されず、マジョリティーの日本人の中にいる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いじめ」の心配もあ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課外活動としてはあるが、在日コリアンの子どもの居場所を作り、在日コリアンにウリマルやウリ文化を教えるための民族学級が、在日コリアン多重地域である大阪を中心に設置されている。ここで働く民族講師の先生たちは、在日コリアンの子どもに常に沿いながら献身的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彼らに対する身分保障は整備されておらず、厳しい待遇の中で活動を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このような、民族学校や民族学級の制度保障を訴えていくことが公教育の中での民族教育を進めていくために非常に重要な課題である。同時に、公教育の枠外でも、在日コリアン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育成のための活動をすすめていくことも非常に重要である。私が所属する在日韓国青年連合(韓青連)では、在日コリアン青年を対象に、在日コリアン青年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育成を図るための各種教育活動を熱心に行っている。年間で約400人の在日コリアン青年がこの教育を受講している。

#### 7)政治的権利(地方参政権獲得問題)

1993年、大阪にある岸和田市で「定住外国人に地方参政権の付与を求める意見書」が採択されてから、日本全国の自治体で同様の意見書が採択された。この運動を中心になって進めてきたのが韓国民団であった。

このような運動を背景にして、日本の国会でも「定住外国人」に地方参政権を付与する法案の審議が行われてきた。様々な議論を経て、「定住外国人」ではなく「永住資格を持つ外国人」に対して、被選挙権を含まない選挙権のみを付与する法案として法案の骨格が固まった。いよいよ大詰めの議論が行われた国会で、自民党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保守勢力は、「永住外国人」に選挙権を与えるのではなく、大多数の在日コリアンの日本国籍取得を緩和し、それにより在日コリアンを日本人にしたうえで、参政権を与えようという趣旨で、旧植民地出身者を対象にした「国籍取得緩和特例法案」を準備し始めた。この対抗案の浮上により、現在「永住外国人に選挙権を付与する法案」の審議は一向に進ま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一方で、住民自治の観点から注目が高まっている「住民投票」の選挙人資格を在日コリアンに与える自治体が登場している。この点は参政権の実現という観点から非常に注目される動きである。

今まで、韓国籍・「朝鮮表示」を保有している外国籍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参政権は与えられていない。参政権の付与は、外国籍を保有する在日コリアンが、マイノリティーの立場から日本の地域社会作りに貢献するために大きく貢献するもの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8)在日コリアン団体の課題～在日の38度線を乗り越えるということ

今まで、日本社会の課題を検討してきた。次に在日コリアン社会内部の課題について検討していきたい。私は在日コリアンには二種類の異なる「38度線」が存在すると考えている。それは、第一に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ける南北対立、そして、第二に増加しつつあるニューカ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と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のコミュニティが分断されているという問題である。

第一に、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ける南北対立という意味での「38度線」の存在である。

ご存知のように、在日コリアン社会には、大韓民国政府を支持する在日本大韓国民団(韓国民団)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を支持する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朝鮮総聯)という二つの大きな在日コリアン団体が存在する。おそらく海外同胞社会の中で最も強く南北分断の直接的影響を受けている社会が在日コリアン社会であろう。

南北が冷戦的対立を激しく繰返していた状況の中で、韓国民団と朝鮮総聯も激しく対立を繰返してきた。本来ならば在日コリアンのために費やされるべきエネルギーが、冷戦的な対立のために消費してきた事実は否めない。

祖国が統一するために在日コリアン団体の和解を進めようという考え方から韓国民団と朝鮮総聯の和解が進んでいくことも非常に重要であるが、一方で、イデオロギーに関係なく在日コリアンが共通して抱える課題(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育成問題など)を共通して解決するために、韓国民団と朝鮮総聯が力をあわせることが今まで以上に求められてく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れが、在日コリアン社会が取り組むべき大きな課題である。

9)もう一つの「38度線」?~ニューカ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と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

そして、もう一つの「38度線」が、ニューカ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と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のコミュニティが分断されているというものである。

1990年以降、韓国から留学や商用などで日本にやってくるニューカマーの数が増大している。その数は公式的な数字では10万人、オーバースティの人々を含めるとその数は18万人とも言わ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ニューカマーのコリアンにとって、オールドタイマーの在日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は縁遠いものに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ニューカ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はこれまで、ともに集う機会も場所も持ちえず、たとえ困難があっても頼るべきところは自分の他にはなかったのが現状であった。そうした中、ニューカ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による在日韓国人連合会が2001年5月20日発足した。

在日韓国人連合会はその結成宣言文で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まず、韓人会は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親睦と協力の場となります。外国生活の中でも民族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失わないように互いに励まし合い、一方、情報の共有と多様な協力事業を通して共同の利益を実現していきます。次に、韓人会はニューカマー韓国人の権益擁護のために努力します。ニューカマー韓国人が日本社会に定着するのに必要な情報の告知や相談を積極的に行い、このための法的、制度的支援を行うことに力を注ぎます。また韓人会は日本社会でわれわれに要求される責任と義務をおろそかにしません。地域社会と共に存すべく多様な親睦行事を展開し、さらに韓日交流の実質的な担当者としての役割を積極的に開拓してまいります。」

こうした課題は、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が抱えている共通課題と大きな違いがない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ニューカ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と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の協力・協働は存在しなかった。

今後は、より豊かな在日コリアン社会を作り上げていくための両コミュニティ同士の協力と協働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 ■日本における外国人問題

### 1)日本における少数民族と外国人その範疇の違い

日本には2001年末現在で1,778,462人の外国人が暮らしている。そのうち韓国籍・「朝鮮表示」保持者は先にも述べたように、632,405人で人口構成比は35.6%である。1945年から1990年まで日本に生活する外国人の80%~90%が韓国籍・「朝鮮表示」保持者であった。このような人口統計にも表れていたように、1990年代まで日本における外国人問題を考えるということは、ほぼ、在日コリアン問題、ひいてはオールドタイマー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問題を考えることであった。

しかしながら、1990年代に入り様々な外国人がや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1994年には、全外国人に占める韓国籍・「朝鮮表示」保持者の割合が50%を下回るようになった。急激な変化である。

このような日本社会の中で外国国籍を持って生活する外国人がいる一方で、日本社会の中で日本国籍を有する少数民族も存在する。それが、アイヌ民族である。また、沖縄に住む人々を少数民族に含める人もいる。

アイヌ民族とは北海道の先住民族である。明治維新以降、新日本政府の植民地化政策が進み、北海道への移住者が増加した。本土からの移住者は、先住していたアイヌの人たちに大きな影響を与え、アイヌ民族は次第に生活に困窮してきた。

一方、日本政府は1900年に「北海道旧土人保護法」を制定し、アイヌの人たちを日本国民に同化させることを目的に、土地を付与して農業を奨励することをはじめ、医療、生活扶助、教育などの保護対策をおこなった。しかし、和人の移住者に大量の土地を配分したあとで、新たに付与する良好な土地は少なく、付与された土地もその多くは、開墾できずに没収されたり、戦後の農地改革では他人に貸していた土地が強制買収されたりしました。この近世・近代におけるアイヌに対する日本社会の収奪と支配、同化政策=アイヌ民族抹殺政策の根柢となった「北海道旧土人保護法」は1997年に「アイヌ新法」ができるまで廃案にされなかった。

日本国籍を有する少数民族であるアイヌ民族と、外国国籍を有する移住労働者や在日コリアンとは、日本国籍の有無による制度的な差別の程度の違いはある。しかしながら、アイヌ民族を同化し抹殺しようとした考えは、在日コリアンを同化し抹殺しようとした考え、そして明らかな他者である移住労働者をはじめとした外国籍保持者を日本社会の構成員として認めない考え方と、根底に流れる日本社会の排他性や「単一民族国家観」という面で全く同じものである。

ここでは、日本における外国人問題を中心に論じていきたい。

### 2)日本における外国人人口動態

先に述べたように、2001年末現在で1,778,462人の外国人が日本に住んでいる。2000年末には1,686,944人だったので1年間で約9万人増加していることとなる。国籍別の内訳だが、韓国籍・「朝鮮表示」保有者以外では、第二位が中国で381,225人(外国人構成比21.4%)、第三位がブラジルで265,962人(15%)、第四位がフィリピンで156,667人(8.8%)、第五位がペルーで50,052人(2.8%)である。第二位の中国は、旧植民地出身者を始め、華僑として日本に住む人々もいるが、最近増加傾向にあるのは、戦争時に中国に残留した日本人孤児の子孫たちである。第三位のブラジルが多い理由であるが、ブラジルに移住した日系人の子孫が大多数である。第五位のペルーも同様に日系人の子孫が大多数である。

さて、この1,778,462人というのは在留資格を有する外国人である。これ以外に、在留期間が切れ、オーバースティ状態になっている外国人が数多くいる。約22万人とも、28万人とも言われている。合計すると、日本には約200万人の外国人が生活していることとなる。日本国籍保有者の人口が1億2千万人いることを考えると、人口の1%を超えて既に2%に近づく勢いになっている。

### 3)新たな入管政策の展開

2000年3月24日、法務省は「出入国管理計画(第二次)」を告示・発表した。この基本計画の特徴は、第一に「国際化の進展とともに、通信・運輸手段の発展と経済システムの自由化の進行によ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が顕著な現状となっている」ことに対応すること、第二に「我が国社会は少子・高齢化の時代を迎えており、特に2000年代から予測されている人口の減少、それに伴う労働力の減少」に対応することである。そして、これら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とりわけ「本格的な人口減少時代の到来の前に、そうした時代のあるべき姿を展望した上での我が国としての対応のあり方を検討・準備しておく必要があり、今次計画においてはその点を確認する」として、本格的な移住労働者の「受け入れ」基調の政策を打ち出している。この計画は、21世紀に向けての本格的な「移住労働者の受け入れ」に向けて、一方では「社会の安全と秩序の維持」という社会防衛と治安管理の始点から、「強力かつ効果的な不法滞在者対策の実施」として(1)摘発の強化、(2)収容施設の活用と早期送還、(3)内外の関係機関との協力体制の確立として、警察、労働省、海上保安庁等関係機関との連携強化を唱えている。他方、「人権尊重の理念の下で、社会のニーズにこたえる外国人の受け

入れを推進することにより、社会のあるべき姿の実現に貢献し、また日本人と外国人が心地よく共生する社会の実現を目指していく」として、出入国管理政策上、初めて「人権尊重」の理念と「共生社会」の実現を唱えている。「外国人受け入れの円滑な実現」に関して、第一にIT分野を中心に技術者や技能者の一層積極的な受け入れ、第二に、農業・水産加工業、ホテル業などへの対象職種の更なる拡大を展望した「研修制度及び技能実習制度の適正かつ円滑な推進と一層の充実」を述べ、とりわけ技能実習制度を独立した「在留資格」として創設することを謳っている。さらに、長期在留外国人の定着化を促進するため、従来の「血統主義」による「日系人家族」を中心として定住化を円滑化させること、「不法滞在者」であっても、日本社会とのつながりが十分に密接と認められるものに対しては、人道的な観点から「在留特別許可」を認める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に基本計画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いう経済政策と少子化・高齢化という人口政策から、本格的な「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基調を提起している。しかし、「人権尊重」と「共生社会の実現」が初めて謳われているものの、その具体的な内容は触れられておらず、他方、「不法滞在者」に対する社会防衛と治安対策はより具体化されている。

総じて、基本計画は国益の観点から、移住労働者とその家族の労働力を如何に利用するかという観点に重点を置いているものである。

さて、次に外国人が日本社会の中でどのような生活状況に直面しているのか、特に生活していくうえで不可欠な「社会保障」「職」といった経済問題と、教育問題を中心に検討したい。

#### 4) 外国人の経済問題

外国人は日本社会の中で最底辺の階層を構成し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いわゆる3K労働を担ったのは、昔は在日コリアンであり今は移住労働者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恵まれている外国人労働者はごくわずかであろう。

また、近年は「外国人研修生・技能実習生」という形で外国人を受け入れ、彼らを中小零細企業に派遣し、安価な労働力として活用するとともに、残業の強制や賃金の中間搾取が行われているといった問題も頻繁に起こっている。

こうした厳しい環境の労働環境や生活環境に直面している外国人にとって本来ならばその支えとなるのが各種社会保障である。しかし、この社会保障から排除されている外国人が数多くいるのが現状である。

生活保護制度は、1990年に厚生省の口頭通達により、それ以前は、現場では「急迫な状況にあって放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広く適用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現在では永住者・定住者以外の外国人への適用が認めら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ある。健康保険は常用雇用の実態があれば在留資格にかかわらず適用されるにもかかわらず、事業所側の「安上がりに外国人を雇用したい」という願望から、本来加入させるべき外国人を未加入のままに放置している事業所が数多く存在する。

このように、正規の在留資格を持つ外国人であっても日本の社会保障制度から除外されている外国人が数多く存在する。

ましてや、オーバーステイ状態になり在留資格を有しない外国人は、日本社会の一切の社会保障制度から対象外となり、一切の社会保障を受けられない状態に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 5) 外国人の教育問題

外国人の教育問題となると様々な問題があるが、ここは外国人の子どもの教育問題に絞って話を進めたい。

2001年末現在、学齢期(6歳~15歳)の外国人の子どもは、117,562人存在する。内訳で言うと、韓国・「朝鮮表示」保持者が47,086人、ブラジルが23,022人、中国が21,296人となっている。この学齢期の子ども中で、日本語教育を特別に受ける必要がある子どもが、

19,250人存在する。内訳では、ポルトガル語を母語とするもの7,518人で一位になっている。以下、中国語5,532人、スペイン語が2,405人と続く。

外国人の子どもたちにとって日本語習得の問題は非常に重要な問題である。義務教育を受けられる子どもにはその機会が開かれているが、経済的な理由や、両親が「不法滞在」であるという理由から数多くの子どもたちが義務教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実情である。

日本の義務教育を受ける外国人の子どもたちにとって、日本で行われている日本語教育の問題である。日本で行われている日本語教育は、適応教育であり、母語を「問題としての言語」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つまり、日本語習得を妨げる言語として母語を忌み嫌う風土が日本の教育現場にはある。その風土が日本語習得のレベルを超えて、日本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強要するにつながる場合も多々ある。

自ら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形成する上で、母語が大き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なら、外国人の子どもに対して、今までのように日本語教育の重要性を訴えるのみならず、母語の教育の重要性を訴えることのできる日本の義務教育へと変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こうした問題から、日本人学校に自分の子どもを通わせるのではなく、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ーが建設した学校に自らの子どもを通わせたいという希望を持つ外国人が増えている。近年になり、ブラジル人学校が増えてきている。ブラジル教育省の認可を受けたものだけでも20校に達し、小規模な塾のようなものをあわせるとそれ以上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しかし、このブラジル人学校も朝鮮学校と同様、各種学校の扱いになり、先に述べた朝鮮学校と同様の問題を抱え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 송승재 발제문에 대한 토론

조경희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 1. 심포지엄 테마에 대한 문제제기 : '소수민족'이란 말과 관련해서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테마를 처음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다.

① '소수민족'과 '외국인'이란 별개의 범주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소수민족'이란 말을 넓게 '민족적 소수자(ethnic minority)'의 의미로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재일조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외국인'이며 '소수민족'하고는 그 범주에서도 정책에서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반세기 이상 일본에 살아왔던 재일조선인들은 영주권을 가진

'정주자'이며 외국적을 가진 출입국관리의 대상자이기에 소수민족이라 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취급에 결과 스스로가 본국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짐으로서 일본내 '소수민족'이 되기를 거부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개념이나 범주 자체를 더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위와 관련해서) 일본에는(한국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이란 테마는 이러한 전제를 은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일본에 있었던 것은 전전의 식민지 정책과 전후의 외국인 출입국관리정책 뿐이다. 지금 일본 내에서 '소수민족'이라고 불리는 아이누, 오키나와도 역사적으로 보면 식민주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소수민족 정책은 커녕 일본국적을 근거로 민족성을 무시한 동화가 정당화 되어왔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는 '단일민족국가'였으며 여기엔 '소수민족'이란 개념이 들어 갈 여지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아이누문화 진흥법(아이누 신법)'이 처음으로 나온 소수민족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도 아이누의 선주권을 규정 안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것이었다). 민족적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없었던 일본의 상황에서 볼 때 '소수민족 정책'이란 말은 정치성이나 역사성이 무시된 경향이 없지 않다.

### 2. 과거 20년간의 일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① '출입국관리'로부터 '이민정책'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소수민족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정책도 협소한 '출입국관리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제자가 지적한 바 같이 80년대 이후의 국제적인 인권체제의 영향,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정주외국인들의 운동에 의해 외국인들의 지위 개선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90년대 이후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출입국관리 정책을 필요로 한 것이다. 발제자도 언급한 2000년에 법무성에서 나온 '제2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은 그러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정부가 임명한 멤버들로 구성된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 보고서(2000)에서도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본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출입국관리에 치우친 미발달의 외국인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 일하고 싶다고 생각할만한 이민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제는 법무성을 비롯한 관료들마저 '외국인과의 공존' '인권' '민족의 다양화'를 장래 일본의 바람직한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얼굴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사회에 이미 정착 된 뒤에 겨우 '이민정책'이란 개념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 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본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살수 있는가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는 점에 있다. 이민정책에는 분명히 법적지위, 생활환경, 인권 등을 고려한 시민권(이란 개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발상이 없는 한 대부분의 이민이 저임금노동자로서 취업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재일조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과의 '공존' '공생'은 거주란 의미에서 이미 반세기 전부터 이루어진 현실이며 이제는 그 내용을 구체화 해나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② 외국인의 포섭과 배제---표면적 다문화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

또 여기서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범주 자체도 분화되어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원활한 외국인 수용'과 '바람직하지 않는 외국인의 배제'는 여전히 출입국관리의 기본적인 '사명'이며 ('제2차기본계획') '좋은 외국인' '나쁜 외국인'이란 코드화가 일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사회적 질서에 저촉하지 않는 '좋은 외국인'들은 '민족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대중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민족적 소수자들의 '멋진' 문화만이 표면적으로 받아드려지는 경향이 있다. 오키나와 가수들이 가지는 '이국적인' 이미지, 그리고 젊은 '재일코리안'들의 자유로운 이미지는 그 좋은 예 일 것이다.

한편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표되는 '나쁜 외국인'들은 오직 배제 대상이 되며 곧 '외국인범죄'와 연결된다. 2000년에 화제가 됐던 도쿄도지사의 이시하라 신타로의 '삼국인' 발언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 요즘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과 같은 집단도 일본사회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서 다시 주목받음으로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역사적 차별은 북조선 지지자에 한정되어 재정당화 되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국가주의, 즉 역사교과서문제를 비롯한 국기, 국가법, 도청법, 유시입법으로 가는 우경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영주자들의 참정권 취득에 대항하여 나온 '국적취득완화법안'도 언뜻 보기에도 외국인의 지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안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무시한 국적과 권리의 폭력적인 동일화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다문화주의로의 지향도 일본의 국익에 맞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새로운 포섭과 배제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독일의 소수민족 정책

최영숙 (독일 한독 문화협회 회장)

### 1. 독일 내 소수민족의 구성과 역사

전후 복구기인 1950년대부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력 수입 정책 시작

60년대 유럽 내 그리스, 터키, 마로코, 투네지엔, 옛 유고와 노동력 수입 계약 체결

### 2. 독일 내 한국동포의 사회적 지위

1950/60년대 한국에서 대량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그리고 광산 노동자가 파독 되었다.

1965~76년 사이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약 11000명의 간호사와 약 8000명의 광부들이 이주 노동자로 독일에 왔다가.

일부는 귀국하고 현재 약 3만 명 (가족, 상사직원, 유학생 포함)이 독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 3. 독일 내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

#### 1) 시민권, 영주권 획득 과정 (2000년 1월 1일 개정)

가) 혈통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부여의 원칙에 속지주의 원칙이 결합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아래에 사항에 해당한자는 만 18세까지

다국적을 허용

-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한 자
-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거나, 3년 이상 무기한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자

이상의 어린이들은 독일국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이는 선택 권리로 만 18세에서 23세 사이에 한 국적을 결정해야 한다. 만 23세까지 다른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을 해야 독일국적의 취득이 확정되며 반대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을 상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이 선택권 모델이 적용되나, 신청서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나) 외국인 법에 의한 시민권 취득과정

현재 8년 이상 독일에 체류한 자로 (과거 15년에서 개정) 다음의 조건을 가진 외국인

- 독일 기본법 준수/ 체류허가증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실직혜택, 빈곤 혜택을 받지 않고 생활할 경제력 소유자 (23세 미만자 제외)
- 모국 국적을 포기한 자/ 범죄 무 경력자/ 독일어 구사능력자

#### 다) 영주권 조건

현재 8년 이상 노동허가증을 가졌거나, 혹은 이전에 정치적 사유에 의한 체류허가증을 가졌다가 현재 3년 이상 무기한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 재산 소득권 소지/ 4년 이상 연금 지불
- 매 3년 중 6개월 이상의 구류, 혹은 일일 180 DM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을 것
-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을 자격 달성: 영구노동허가증 소유, 독일어 구사 능력,

충분한 거주공간 소유, 주방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

망명권 소지자

독일인과 결혼한 자로서 5년 이상 체류허가증 소지자

#### 2)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 3) 세금납부, 의료보험 등의 사회복지 혜택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모든 외국인 기본적으로 독일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본국과의 관계

한국이나 독일 모두 이중 국적을 불허하며 독일의 경우 예외 조건이 있음

독일에서 6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 8년 이상 체류한 자로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독일 재 입국하는 경우에만 이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5) 이주민의 노동허가

일반 노동허가 (Arbeitserlaubnis): 시한적 체류허가 소지자나 특별 목적 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주는 것으로, 기한이 제한, 외국인 청의 반대 없을 경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 독일은 특별한 경우(요리사, 컴퓨터 산업 기능 노동자 등)를 제외하고 취업 이주를 반대한다.

#### 영구 노동허가 (Arbeitsberechtigung):

- 체류허가를 가진 자로 5년 이상 피고용자로 활동한 자 (부당노동행위 금지)
- 독일인 혹은 유럽연합 소속 시민과 결혼한 자 혹은 그 동거인 및 가족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
- 망명증 소지자
  - \*제네바 협정에 따른 난민자
- 독일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난민증 소유자
- 6년 이상 독일에 체류한 자로 일반 체류허가 혹은 정치적 사유에 의한 체류 허가를 받은 자

#### 4. 독일 내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기회의 균등

##### 1) 취업의 기회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 노동 허가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 목적에 따르며, 특별 분야의 노동 허가증은 독일 노동 시장의 필요에 의해 발급된다. 영구 노동 허가증 소지자는 법적으로 독일인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갖는다.

##### 2) 독일 내 한국인의 경제활동 영역:

의료부문의 간호사, 전국 발전소 연합 노동자 및 기타 독일 내 대기업 생산부문

3)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동일한 은행 대출 및 사업체 설립의 기회를 갖는다.

#### 5. 독일 내 외국인의 민족문화 정체성 유지의 현황

1) 언어교육: 외국인의 독일 사회 통합을 위해 독일어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 외국인법의 모든 조항에 독일어 구사능력이 전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 독일 내 다문화 공존을 위해 모국어 교육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예: 한글 학교에 대한 건물지 원, 독일 시민 대학 내 한국어 강좌, 인문계 고등학교, 국제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인정)

2) 결혼: 독일 거주 한국인 1세대 및 2세의 경우 민족 간 결혼 선호

3) 민족학교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자국정부에 위임

4) 공식교육 제도 내에서의 소수 민족교육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소수의 예외 있음 (캐네디학교, 불란서 김나지움, 유럽학교)

5) 독일 내 공식적인 체류 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은 생계보장, 질병, 임신, 모성보호, 간호 등 기본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동일하게 갖는다.

6) 종교의 자유 보장: 종교 활동을 위한 스님 목사 그리고 신부의 체류허가 보장

7) 소수 민족 문화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다문화 사회정책으로 지원  
(비영리 목적의 문화활동 단체에 대한 세금, 건물 지원 등)

##### 8) 한국 민족 생활 공동체의 현황:

각 지역별 한인회, 다양한 목적의 단체 (정치, 문화, 언어, 체육, 친목, 직업 등)

한인 2세의 자율적 활동, 조직 (천동소리, 한가람, 5월 세미나 등)

정부 공식 지원 단체로 대사관 산하 문화원

## 재외 독일인에 대한 독일 정책

신효진(독일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생)

한국과 비교해 독일은 적어도 60년대부터 해외로의 이주국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민국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국인 한국의 관점에서 재외 동포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독일의 상황에서 해외 거주 독일인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배경을 갖는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둘 사이의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현재 4세대까지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계속된 토론에 힘입어 1999년 독일 시민권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 출생지주의 (속지주의) 원칙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2002년 3월 1일부터 모든 상호 이민은 이민법에 근거해 법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 1. 재외 거주 독일인에 대한 정의와 구분

1) 1914년 1월 1일 실행되어 2002년 8월 21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민권 법 1조 독일인의 정의에 따르면, 독일인은 독일 국적을 가진 자이다. “신분적 독일인”은 이 1조에 의한 독일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 시민권은 출생, 입양, 귀화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독일 시민권법의 “출생”이라는 구절에서 혈통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개정법에 따라 2002년부터 출생지주의 (속지주의)가 또한 적용된다.

전 동독시민권의 취득은 독일 시민권 획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2) 독일국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들이 있다:

1. 독일 시민권자 (귀화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2. 신분적 독일인: 혈통적으로 독일민족이지만, 현재 독일 시민권을 갖지 않은 난민 또는 추방자 혹은 그 부부 또는 자손

3. 과거 독일 시민권자로 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즉 독일 민족사회당히틀러 집권시기)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자와 그 자손들로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 3) 다음의 경우 독일 시민권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시민권 해제 신청에 의해서 (신분적 독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다른 나라의 국적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3. 이중국적 등의 이유로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4. 어린이로 외국인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5. 외국 군대 혹은 그에 준하는 무장조직에 가입하는 경우

6. 기타 개인적인 사유

법적인 독일 시민권의 획득과 상실은 신분적 독일인에게도 유효하다.

## 2. 재외 독일인 분포 현황

Land	Zu- und Fortzüge von Deutschen im Ausland 1996	
	Zuzüge aus	Fortzüge nach
EUROPA		
Belgien	126.343	57.562
Dänemark	2.148	2.695
Finnland	511	937
Frankreich	175	239
Griechenland	5.638	7.114
Großbritannien	1.011	984
Irland	3.626	5.269
Italien	366	527
Luxemburg	2.689	2.563
Niederlande	540	759
Osterreich	4.124	4.514
Portugal	2.849	4.372
Schweden	864	909
Spanien	386	795
Polen	4.007	5.455
Russ. Föd.	13.909	7.228
Schweiz	51.496	2.585
Türkei	3.560	5.340
AFRIKA	1.120	1.081
AMERIKA	3.993	3.690
ASIEN	16.905	19.939
Kasachstan	93.887	16.354
AUSTRALIEN + OZEANIEN	79.723	9.391
Unbek. Ausland	1.277	1.917
GESAMT	1.755	14.137
	251.737	118.43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Stat. Jahrbuch 1998

## 3. 재외 독일인 형성의 역사

1) “신분적 독일인”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배경이다. 일 이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그로 인한 독일제국 영토에 대한 재 규정으로 이전 동부지역과 동유럽으로부터 천 삼백만이 추방되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937년 독일 국경 안으로 들어와 어짜피 독일 제국 법에 의해 독일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즉 1949년 서독과 동독 국가 건설 이후 이 두 국가 영역 안에서 사라지 않은 사람들을 “신분적 독일인”이라고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 소위 뒤늦은 이주자들과 그 자손들이 그들의 혈통과 독일인으로서의 특성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내는 경우 독일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2) 다음의 큰 범주는 국외 이주자들이다. 통계에 의하면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1923년에서 1949년 사이에 유럽이 아니라 대륙을 건너 이주한 박해자 약 300만 명이 천명, 수감자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재시민권 획득을 위해서도 개정법은 조건을 완화시켰다.

3) 독일 시민권이 없는 신분적 독일인은, 해당 국가에서 난민 혹은 추방된 독일민족 혹은 그 부부 혹은 자손이라는 증명을 받는 경우, 개정 시민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4) 독일시민 정의에서 특이한 점은 독일인의 “민족적 귀속에 대한 개념” 사용과 신분적 독일인인 어린이의 “독일인 특성”에 대한 개념이다.

### 4. 재외 독일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권리 의무

1) 이전에 독일인이었으나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고 따라서 독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전에 혈통에 의해서, 또는 귀화 혹은 입양에 의해 독일 국적을 획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 다시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다 (즉 한번 독일 국적을 가졌던 사람은 이전에 독일민족이었는지 혹은 외국인이었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귀화의 기회를 갖는다).

2) 그러나 한쪽 부모 혹은 부모 모두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고 동시에 그곳에 그들의 일상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더 이상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국적 불명이 되는 경우 혹은 한쪽 또는 부모 양자가 그 자녀의 출생은 해당 외국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3) 외국인 혹은 과거 국외 이주자로 더 이상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손으로 독일에 살지 않는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친척관계, 토지소유자 등) 독일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다.

4) 외국 국적을 가진 독일인은 개정법에 따라 완화된 조건에 의해 자신들의 독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적유지 허가를 부여할 때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이해 관점이 고려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경우에는 특히, 지속되는 독일과의 연관, 예를 들면 가까운 친족관계 혹은 부동산 등의 재산이 참작된다.

5) 이중국적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독일인이 독일 특별한 허락 없이 타국의 군복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자신의 독일국적을 상실한다.

6) 항상적인 거주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외국에 둔 외국거주 독일인의 경우 자신들의 항상적인 거주지를 외국에 두게 될 의도를 증명하므로 병역의무를 갖지 않는다.

7) 독일 기본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그리고 1949년 5월 23일 이후 최소 석달간 연속적으로 독일에 살았던 모든 독일인은 선거권을 갖는다. 자신들의 항상적인 거주지를 외국에 둔 외국거주 독일인을 위해 서면투표의 가능성 보장한다. 유럽공동체 국가에 살고 있는 독일인은 무제한의 선거권을 가지면, 다른 경우 최초 이주 이후 25년 동안 선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은 유럽 선거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 5. 재외 독일인을 위한 조직 및 활동 내용

1) 외국 거주 독일인의 법적 정치적 대리를 위해 재외공관을 둔다. 이는 한편으로 타국과의 관계 도모, 그리고 국가간 혹은 초국가적 조직들과의 관계 도모를 그 관할 업무로 한다. 이 과제는 기본법 32조에 따라 연방 관할 사항이다. 재외공관은 외국에서의 대리를 관할 업무로 한다. 재외공관의 훈령/지시에 의해 이들은 독일 국가를 대리하고 그 이해를 지키며 해당국에 있는 자국 시민을 보호한다. 재외공관은 해당국 정부와 협상하고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지원한다.

대리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보를 조달한다.
- 서로 다른 연방 혹은 지역 차원의 정부 부처에게 중요한 업무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한다.
- 위기에 처한 독일 시민을 돋는다.
- 해당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을 돋고 일반적인 그들의 상업무를 촉진한다.

문화교류를 지원한다.

2) 독일 외무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외공관의 문화, 교육정책이다. 그 주요한 분야는

1. 교육과 학문영역에서의 협력
2. 사회정치적 공동노력과 국제적 문화교류
3. 외국에서의 독일 언어 지원
4. 예술 음악 문학의 교환
5. 청소년교류와 체육 교류
6. 외국내 독일학교 지원 등이다.

3) 이러한 정책 실행을 위해 주요한 중간 조직으로 예를 들면 외국학교조직을 위한 본부 (ZfA), 피테인스티트 인터나치오네스 (GI) 그리고 독일 학술 교류 본부 (DAAD)가 있다.

1. 외국학교 조직을 위한 본부: 독일 연방 행정기구로 전 세계에 있는 약500여개 독일학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그 중117개 학교는 사립재단이나 동일한 국가 조직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약2000여 선생님, 프로그램전문가, 그리고 과목전담 상담자가 조직적, 교육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원활동을 위해 매년 약1억7천8백만 유로의 재정규모를 갖는다.

ZfA의 중요한 과제로 이 외에도 독일어 디플로머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 시험 등을 집행하고, 각 학교들의 법적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1. 피테인스티트 인터나치오네스는 외국에서의 독일 문화정책을 위한 가장 큰 조직이다.

2002년1월 피테 인스티트와 인터나치오네스의 합병으로 출발했으며 77개 나라의 141개 문화연구소 내에 약3100명의 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예술, 사회, 교육, 학문, 언론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의 문화프로그램 조직과 기획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내와 국외에서 독일언어 교육강좌를 열고 있다. 독일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정보와 매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센터와 도서관을 운영한다.

독일과 관련된 책, 잡지, 상업영화, 기록영화 등을 준비하고 그 온라인 공급을 담당한다.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내에서 정보와 상호접촉의 망을 조직한다.

뮌헨에서 열리는 "피테포럼"은 세계문화를 독일에 알리고 국제적 문화토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단체는 재외공관, 연방공보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또 제 삼자 기부 또는 자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 2001년 예산은 약2억4천2백만 유로이며 그 중 삼분의 일은 자체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했다.

3. 독일 학술 교환 본부 (DAAD)는 독일 대학 산하의 독립적 단체로 학생 교수의 국제적 상호 교류를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조직은 연방 교육 연구성 등의 국가조직과 유럽연합 나토 등의 국제적 조직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 토론문

### <독일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독일인에 대한 독일 정책>에 대한 토론문

남상희

#### 1. 논의의 시작

- 세계화 (지리적 이동의 확대, 사회/경제/정치의 상호교류 증가)
- 다른 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증가
-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국적

위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나라마다의 정책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각 주권 국가들의 반응과 대책을 검토/비교해보는 작업은,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정책,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 2 외국인의 독일 체류를 제한하는 요건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 여행비자
  - 취업비자: 노동허가 취득의 어려움, 지위의 불안정
  - 유학비자: 어학자격조건의 강화, 취업의 제한, 유학기간의 제한, 졸업생의 귀국 유도
  - 국적취득
    - 1) 이중국적의 원칙적 금지
    - 2) 취업비자로 국적취득 가능 나라마다의 소수민족 정책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 3) 국제결혼
    - 4) 정치적 난민
- \*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시민/여성단체의 활동

#### 3 독일에 살면 독일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 독일어 구사능력
- 일상 문화에서의 적응 및 통합
- 세금납부의 의무 및 사회복지 혜택

\* 갈등의 불씨: 독일체류 터어키인들의 의례/문화적 분리 등

#### 4 한국은 독일에 있는 재외동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 1) 정부가 재독 동포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거나 상징적이다.
  - 국가주권의 인정에 따른 이동의 자유

- 국가 이미지가 좋아진 데 따른 자긍심의 증가
- 2) 직접적인 도움은 주로 현지의 종교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는다.
- 3) 지속적이고 조직력이 있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 신문/잡지의 정기적 보급
  - 각 도서관에 한국에 대한 소개 책자의 정기적 보급
  - 지속적인 문화행사의 정기적 개최
  - 개인적인 상호 방문을 지원
  - 한국어학당 및 문화관의 설치
- \*독일 저널리즘의 한국관련기사 보도에 대한 통제 및 비판

독일의 정치적 선택에 관계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일은,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이다.

(\*대한민국 재외동포법이 지닌 문제점)

## 5.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과 그리고 소수민족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지위는 독일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최근 10여년 전부터 안개 된 소수민족과 관련된 문제들

- 아시아(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 조선족 및 재외 한민족의 입국 및 국적 인정
- 탈북자

## 6.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현황 및 과제

소수민족 사이의 관계설정 및 소수민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연대와,

독일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의 결속이 필요하다.

## 7. 논의를 마치며

2001년 9.11 테러 이후의 세계정세 변화는 국가주권 및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어느정도 변화시킬 것인가?

## 발제문

### 인종적, 종족적 소수를 위한 미국의 정책

김대영(미국 매릴랜드 사회학과 교수)

#### 미국의 인종적, 종족적 다양성 :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스스로를 이민자의 나라라고 자부한다. 하나의 땅위에 다양한 집단들의 혼합을 뜻하는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은 언론매체와 정치인들에 의해 요란스럽게 강조되고 떠벌려진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역사와 현시대의 인종과 종족 관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평등주의와 수용을 상징하는 용광로와는 거리가 멀다.

- 미국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출발할 당시 인종적, 종족적 다원성을 위한 의지는 없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미국의 인종적, 종족적 다원성을 낳은 것은 넓은 토지와 노동력의 필요였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1960년대 이전의 이민정책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간단히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식민지 기간에 당시의 식민지 사회를 지배한 민족은 영국인이었다. 식민지화와 새로운 공화국의 건국직후에 미국의 원주민들은 침략당했고, 무력이나 질병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 앵글로 신봉은 지배적 문화였고, 다른 유럽계 민족은 앵글로의 문화와 사회에 순응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사회동화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였다.
  - 노동력의 필요로 스페인은 에코마엔다 제(Encomienda system) 하에 미국 원주민들을 이용 했다. 그러나 미국 원주민들은 지역과 지세를 잘 알았기에 도망을 치곤 했고,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지 개척자들과 새 공화국은 징용고용계약을 통해 유럽에서 노동력을 수입해 오게 되었다. 이 제도는 영국인과 북서유럽인들을 몇 년동안 노동을 하면 자유롭게 풀어주는 조건으로 대려왔다. 1600년대에 식민지 개척자들은 또한 아프리카 노예의 수입을 환대했다. 담배농장들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목화가 소개되고 그 수익성이 알려지자 노예제는 제도화되고,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또한 강제로 카리브와 남미의 설탕과 커피농장에 끌려가 일하게 됐다.]
- 1790년3월26일 국회는 처음으로 귀화법을 통과시켰다. 자유가 있고, 백인인 성인 외국인 남자, 여자는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 2년 동안 거주하였으면 누구나 시민권 자격이 있었다. 1795년 귀화법은 5년간 거주했고, 모국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는 "자유가 있는 백인"에게 시민권을 주었다. 그 후 1798년에는 거주기간을 14년으로 연장한 더 엄격한 법이 나왔다. 초기에 투표권은 미국 출생자와 외국 출생자 모두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비시민권자 당원이 많은 정당이 불리하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변화하게 되었다. 마침내, 1802년에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은 5년으로 줄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